

청소년의 정서적 방임 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차 은 빈* · 조 영 일**

【요 약】

청소년 자살은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요인들 중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방임이 전체 학대사례 중에서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자아존중감으로 설정하여, 정서적 방임과 청소년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방임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살생각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방임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나 지자체가 나서 부모 교육, 부모자녀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통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다양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정서적 방임, 청소년 학대, 청소년 자살, 자살예방, 자살생각, 자아존중감

*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제1저자)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교수(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분석 결과
V. 결론 및 논의

I. 서 론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9년째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는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기는 급격하게 신체적·심리적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로 가정환경과 사회환경 모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며, 이 시기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는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며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지지와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오은주, 2017). 그러나 국내에서 초·중·고등학생 3,5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지역의 아동과 청소년 4명 중 1명은 학대와 방임 등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AC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미선, 2020), 언론에서는 연일 잇따르는 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방임은 ‘소리 없는 학대’라고 불

리며, 보호자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보건복지부, 1999). 방임은 신체적 학대와는 다르게 폭력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거나 신체에 학대 증거가 남지 않고,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자행되기 때문에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조차 어렵다(송미령, 2010). 따라서 정서적 방임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하고 나아가 신체에 질병이나 이상을 유발할 정도의 치명적 손상을 초래하는 학대유형 중 하나이다(원지원, 2005).

이러한 학대나 방임이 자살생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김가영, 2008). 가족간의 유대감 부족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자살생각까지 불러일으킨다는 사실 또한 밝혀진 바 있다(최인재, 2010).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은 자살에 대한 생각만으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되거나 자살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사전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정서적 방임 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모든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을 가지진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살생각을 내적으로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 기제를 자아존중감이라고 가정하였다.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이며,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아존중감(정기원 외, 2014)은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탁정화 외, 2014). 따라서 보호자에 의해 정서적 지지와 보호가 결핍되고, 애정과 관심이 부족한 학대유형인 정서적 방임이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정서적 방임과 청소년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살하려는 방법에 대한 생각까지를 말한다(홍영수, 2005). 따라서 자살생각은 행동으로 가기 전 심리적·정서적으로 머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자살생각으로 인해 자살시도나 행위가 반드시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살생각을 많이 할수록 실제 자살시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유용식, 2014), 청소년 자살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자살생각이 될 것이다.

부모로부터 당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 중 남학생 33.8%와 여학생 41.5%가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재엽 외, 2009),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선행연구 결과로 나타났다(장용환 외, 2010). 또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그리고 중복학대 등으로 학대유형을 세분화하여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에서도 각 학대유형과 자살사고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박경, 2005).

그중 방임은 부모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신체적 욕구나 격려, 소속감, 따뜻함과 같은 심리적·정서적 욕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방임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우울과 자존감 문제를 일으키거나(Kinard, 2004),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박가화 외, 2014). 또한 정서적 방임 경험은 자살시도를 2.3배 증가시키고, 자살생각은 1.4배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Angelakis et al., 2019).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정서적 방임 경험이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서적 방임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뜻하며, 자기개념의 구성요소로 간주된다(이미영, 2020). 즉, 자아존중감은 자기 가치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평가로 정신건강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이종운, 2017),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이를 가지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 행복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박희수 외, 2014). 청소년기는 여러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면서 자아존중감의 정

립이 요구되는데,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이론에서도 이를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반면(김현진, 2017; 정기원 외, 2014),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현주 외, 2015; 임선아, 2013; 정기원 외, 2014). 또한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접촉, 정서적 지지가 결여되어 있고, 애정결핍과 무시를 받으며 생활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송영혜, 2000).

특히나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급격한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또는 가정환경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자아존중감 발달을 넘어서 자살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예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3.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자살생각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며, 자살생각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김한솔 외, 2019). 최근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두 변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며(김성현 외, 2016; 임재숙, 2018), 청소년들의 자살을 완충하는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김현주, 2008; 박병금, 2006; 홍나미 외, 1999).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공격성, 자해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고(이혜순 외, 2012),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경우 스트레스와 위기에 취약하며 이는 자살생각 또는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김소영 외, 2012; 김창곤, 2006; 신혜정 외, 2014).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부정적 사고를 가지기 쉽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융통성과 대처능력이 부족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좌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교현 외, 2005). 따라서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문제를 겪거나 자살생각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오승환, 2009).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 중 중·고등학생용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은 교육부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변형비례배분을 통해 추출되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방법이다.

분석 대상은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6,315명이다. 남학생은 3,290명(52%)이며, 여학생은 3,025명(48%)로 구성되었다.

2. 주요변수 및 측정

1) 독립변수 : 정서적 방임

최근 1년 동안 부모님 또는 보호자로부터 경험한 방임을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와 같은 방임경험을 묻는 4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점: 한 번도 없음, 5점: 1주일에 1~2회 이상)로 측정한다. 정서적 방임 경험에 대한 설문지 내 문항은 총 5개였지만, 신뢰도 분석 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1개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정서적 방임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693으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 청소년의 자살생각

자살생각 빈도는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를 묻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1점(생각해 본 적이 없다), 2점(가끔

생각한다), 3점(자주 생각한다)으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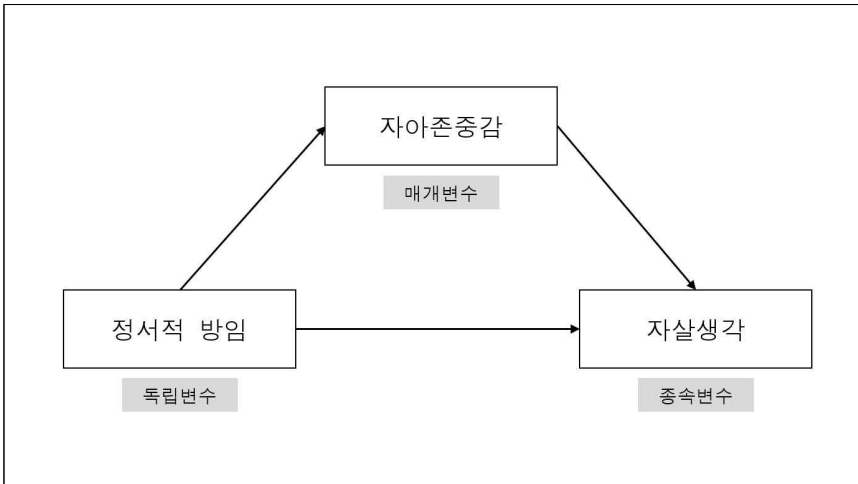
3) 매개변수 : 자아존중감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의 4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역채점 문항은 역코딩하였으며,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4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30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S for Windows 26.0 버전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서적 방임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방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Hayes와 Preacher(2012)가 제시한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은 3,290명(52%)이며, 여성은 3,025명(48%)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체 학생 중 중학생이 2,858명(45.3%)이고, 일반고 학생이 2,456명(38.9%), 특수목적고 학생이 60명(0.9%), 특성화계고 학생이 664명(10.5%), 자율고 학생이 277명(4.4%)으로 고등학생은 총 3,456명이었다. 학업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 평가의 결과는 못하는 수준이 1,926명(30.5%), 중간 수준이 2,720명(43.1%), 잘하는 수준이 1,662명(26.3%)이었고, 5점 만점에 평균 2.04점(SD=.753)이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가정의 경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잘 사는 수준이라고 답한 학생이 3,056명(48.4%), 중간 수준이라고 답한 학생이 2,485명(39.4%), 못 사는 수준이라고 답한 학생은 768명(12.2%)이었다. 죽고 싶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문항에서는 결측값을 제외하고 전체 2,087명 중 777명(37.2%)이 학업문제가 그 이유라고 답했고 다음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301명(14.4%), 가족 간의 갈등이 373명(17.9%), 기타가 301명(33.1%),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이 150명(7.2%), 경제적인 어려움이 30명(1.4%)순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N(%)
성별	남성	3,290(52%)
	여성	3,025(48%)
중·고등학생	중학생	2,858(45.3%)
	고등학생	3,456(54.7%)
학교유형	일반고	2,456(38.9%)
	특수목적고	60(0.9%)
	특성화계고	664(10.5%)
	자율고	277(4.4%)
학업성적	못하는 수준	1,926(30.5%)
	중간 수준	2,720(43.1%)
	잘하는 수준	1,662(26.3%)
	평균(표준편차)	2.04(.753)
경제 수준	잘 사는 수준	3,056(48.4%)
	중간 수준	2,485(39.4%)
	못 사는 수준	768(12.2%)
죽고 싶은 이유	학업문제	777(37.2%)
	미래에 대한 불안	301(14.4%)
	가족 간의 갈등	373(17.9%)
	기타	301(33.1%)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150(7.2%)
	경제적인 어려움	30(1.4%)

2.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정서적 방임,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살생각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방임의 경우 자아존중감($r=-.138, p<.01$)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자살생각($r=.141, p<.01$)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r=-.367, p<.01$)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정서적 방임을 자주 경험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표 2>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정서적 방임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정서적 방임	1		
자아존중감	-.138**	1	
자살생각	.141**	-.367**	1

주: * $p < .05$, ** $p < .01$, *** $p < .001$

3. 정서적 방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정서적 방임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매개변수의 매개효과

경로	B	se	t	p	LLCI	ULCI
정서적 방임 → 자아존중감	-0.266	0.026	-10.316***	.000	-0.316	-0.215
정서적 방임 → 자살생각	0.153	0.02	7.55***	.000	0.113	0.192
자아존중감 → 자살생각	-0.299	0.01	-30.125***	.000	-0.318	-0.279

주: * $p < .05$, ** $p < .01$, *** $p < .001$

각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 정서적 방임은 자아존중감($B=-0.266$, $t=-10.316$, $p < .001$)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살생각($B=0.153$, $t=7.55$, $p < .001$)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B=-0.299$, $t=-30.125$, $p < .001$)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서적 방임 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7

정서적 방임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Shrout&Bolger, 2002). 정서적 방임이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의 부분매개를 5000번 반복추출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정서적 방임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0.079	0.009	0.063	0.098

분석 결과, 정서적 방임이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079$, $CI[0.063\sim0.098]$).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방임 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유의한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의의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방임 경험이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정서적 방임을 자주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학대 경험이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정지선, 2021; 김지연 외 2014)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또는 학대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 때 자살생각이 증가하게 된다(McClelland et al., 2020).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도(이미영, 2020) 존재하므로 종합

적으로 살펴봤을 때, 결국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정환경이 청소년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서적 방임이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정서적 방임 경험이 자아존중감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김현주, 2015; 정기원, 2014; 임선아, 201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을 더 자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김성현 외, 2016; 임재숙, 2018)을 지지한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이미영, 2021)를 통해서도 자아존중감 발달이 청소년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정서적 방임 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정서적 방임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살생각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정서적 방임 경험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21.8%가 외로움과 고독을 ‘자살하고 싶었던 이유’로 기술할 정도로(김주연 외, 2012) 이 시기에 사회적 관계의 결여는 청소년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러 관계들 중에서도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빈약할 때 청소년들은 외로움을 더 많이 보고한다고 한다(Tauschke et al., 1990). 이처럼 청소년들의 정서 및 정신건강이 청소년 자살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현재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기관 의견조사와 전문가 집단초점면접(FGI)를 실시한 결과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나 부처별 업무 체계화가 되지 못하는 점, 청소년의 자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김기현, 2013). 이에 따라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거나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가정 내에서의 노력과 변화일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에서도 전체 학대사례 17,464건 중 방임이 5,172건을 차지하고 있고, 방임 사례에서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는 86.9%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을 낮추고자 한다면 근본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학교나 지자체에서 부모 교육이나 부모자녀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교내에서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 기제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낮아지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 스스로에 대한 평가된 가치로 정의할 수 있으며(Frisen, 2007), 스스로를 얼마나 존경하는가 또는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뜻한다(Rosenberg, 1979).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생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중재하며(Brown et al., 1978),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 스트레스에 덜 취약하고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Aspinwall et al., 1992; Taylor et al., 1988).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귀인양식을 지녀 실패를 경험할 때 우울이 증가한다고 한다(Metalsky et al., 1993).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나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격 발달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살환자들을 위한 인지치료는 자살관련 사고를 변화시키고 자살위기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취약성 요인을 변화시켜 치료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Wenzel, 2008), 심리치료나 미술치료와 같은 심리지원서비스가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신현재, 2017).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심리치료, 미술치료 등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교내에서 직접 실시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긍정성과 자기에 발달을 위한 주기적인 상담 프로그

램도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자살위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친구와 같은 애착대상과의 관계, 애착경험을 통한 자가지각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Bostik, 2007)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가정과 교내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자살예방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경제수준이나 학업수준 등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들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별, 주관적 경제수준이나 학업수준, 평소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 등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지 좀 더 세분화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기현 · 오병돈 · 이경숙. (2013).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18.
- 김교현 · 권선중 · 심미영. (2005). “초등학생의 시험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0(1): 113-126.
- 김소영 · 홍세희. (2012). “초기청소년 자살생각의 변화유형분류와 예측”. 「한국청소년연구」, 23(1): 251-275.
- 김성현 · 주동범. (201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3(3): 569-583.
- 김재엽 · 정운경 · 이진석. (2009). “가정내 자녀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119-144.
- 김주연 · 도현심. (2012).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외로움 : 또래관계의 질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3(1): 111-131.
- 김지연 · 이기학. (2014).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성취동기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7(3): 1-25.
- 김창곤. (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환경적 변인”. 「청소년복지연구」, 8(1): 91-107.
- 김한솔 · 염동문 · 장유미. (201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매개효과검정”. 「사회과학연구」, 30(1): 67-85.
- 김현진.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장기적 매개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0): 30-40.
- 김현주. (2008). “청소년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27): 69-93.
- 김현주 · 홍상환.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13-429.

- 박가화·이지민. (2014). “부모의 양육행동이 남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4): 997-1013.
- 박경. (2005).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2): 131-147.
- 박병금. (200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요인 탐색”. 「한국사회복지학회 : 학술대회논문집」, 399-403.
- 박희수·문승연. (2014).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한국자치행정학보」, 28(3): 197-218.
- 신현재. (2017).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의 효과”.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0(1): 51-70.
- 신혜정·정익중·이상아·이향연·박재연. (2014). “청소년의 우울,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사회복지」, 27: 25-50.
- 송미령·이재연. (2011).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9: 219-244.
- 송영혜·손명희. (2000). “방임된 아동의 대인관계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심리치료 적용연구”. 「한국재활과학회」, 23(1): 157-176
- 오승환. (2009).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우울자아존중감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분석-”. 「한국사회복지」, 16: 53-73.
- 오은주. (2017). “남녀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유형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자존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54: 139-152.
- 원지원·최민숙. (2005). “게임놀이치료가 방임된 아동의 사회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9(1): 53-65.
- 유용식. (2014). “우울 및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14(10): 189-197.
- 이미영. (2020).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4): 115-135.
- _____. (2021).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조절효과로”. 「청소년문화포럼」, (66): 83-104
- 이종운. (2017).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에 관한 연구”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 797-806.
- 이혜순·옥지원. (2012). “청소년의 충동성, 자아존중감, 우울수준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 438-446.
- 임선아.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생의 자기조절능력과 자존감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 「한국초등교육학회」, 26(1): 121-138
- 장용환·송지혜. (2011).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청소년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정책과학연구」, 20(2): 80-104.
- 정기원·안귀여루. (2014). “부모양육태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한국심리학회지」, 19(2): 549-567.
- 최인재. (2010). “청소년기 자녀의 자살 생각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청소년학연구」, 17(9): 105-130.
- 탁정화·강현미. (2014).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유아교육연구」, 34(5): 107-128.
- 홍나미·정영순. (1999). “청소년 자살생각 영향요인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37: 449-473.
- 홍영수. (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원의 완충효과” . 「임상사회사업연구」, 2(1): 249-272.

〈국외문헌〉

- Angelakis, I., Gillespie, E. L., and Panagioti, M. (2019).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ult suicidality: a comprehensive systematic review with meta-analysis” . *Psychological medicine*, 49(7): 1057-1078.
- Bostik, K. E., & Everall, R. D. (2007). “Healing from suicide: Adolescent perception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5(1): 79-96.
- Kinard, E. M. (2004). “Methodological issues in assessing the effects of maltreatment characteristics on behavioral adjustment in maltreated children” .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5): 303-318.
- Lee, M. S., and Kim, H. S., and Bhang, S. Y. (2020). “Exposure to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and Stress among the

Community-based Urban Pediatric Population in Korea” .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5(50).

Metha, A., & McWhirter, E. H. (1997). “Suicide ideation, depression, and stressful life events among gifted adolescents” ,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0(3): 284-304.

Tauschke, E., Merskey, H., & Helmes, E. (1990). “A systematic inquiry into recollections of childhood experi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adult defence mechanisms” ,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7(3): 392-398.

Wenzel, A., & Beck, A. T. (2008). “A cognitive model of suicidal behavior: Theory and treatment” ,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2(4): 189-201.

【Abstract】

Effect of adolescents' emotional neglect experience on suicidal though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Eunbin Cha*

Young Il Cho**

Adolescent suicide is currently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studies are steadily underway to find factors that influence adolescents' suicidal thoughts. Based on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parents' parenting attitudes and family environment are directly related to suicide in adolescence,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whether emotional neglect affects suicidal thoughts. In addition, by setting a psychological mechanism that can control suicidal thoughts internally as self-esteem,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neglect and adolescent suicidal thoughts was investigated.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of the "2019 Survey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xperience of emotional neglect negatively affects self-esteem and positively significantly affects suicidal thoughts, and self-esteem negatively affects suicidal thoughts and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neglect and suicidal thought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adolescent suicidal thoughts, it was found that various interventions were needed in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to prevent emotional neglect at home and improve adolescents' self-esteem.

Key Words: Emotional neglect, youth abuse, youth suicide, suicide prevention, suicidal

*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first author)

** Professor, College of Police & Criminal Justice in Dongguk University(Seoul)(corresponding author)

26 형사사법연구 제5권 제1호

thoughts, and self-esteem.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경험이 비행피해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지형 · 문인수*

【요약】

2004년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제정한 이후, 한국 사회는 청소년 비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미디어에서도 어렵지 않게 현황을 접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기준 다문화 청소년은 총 16만 명으로 전체 초·중·고등학생 수의 3%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교육 현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는 문화적 적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행피해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1세부터 19세까지 총 800명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비행피해경험과 비행피해두려움의 관계를 또래 애착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비행피해경험과 비행피해두려움, 또래 애착은 서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비행피해경험과 비행피해두려움의 관계를 또래 애착이 매개했다. 이는 비행피해경험이 비행피해두려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또래 애착이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비행피해경험의 후유증에서 또래애착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행피해연구를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장하고, 주로 성인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과 더불어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다문화 청소년, 비행피해두려움, 또래애착, 비행피해, 매개효과

*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제1저자)

**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분석 결과
V. 결 론

I. 서 론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비행과 그 피해실태는 오랜 관심의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폭력이 처음으로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1990년대 이후로 2004년에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관련 예방 교육을 실행하거나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처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2년~2017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8년 다시 증가하였으며(교육부, 2018) 다문화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또한 2018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9).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행피해 실태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행피해의 유해성은 다수의 연구에서 검증되어왔다. 비행피해를 많이 경험할수록 비행과 비행가해를 많이 저질렀으며, 특히, 우울은 비행피해가 비행가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유의하게 매개했다(양혁 등, 2019). 또한, 비행피해는 정서 및 신체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류승아, 2016) 자살 생각과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김재엽, 2010).

이러한 범죄피해 경험은 범죄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Skogan, 1986; Garofalo, 1979; 장안식 외, 2011).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범죄피해 경험이 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선행연구에서도 이에 대해 검증한 바 있다(노성호, 2013; 김차영, 2021). 이러한 유해성 때문에 일반가정 청소년에 관해서는 범죄피해 예측과 예방을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기 쉽지 않다.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정책은 주로 교육이나 문화 적응 지원에 중점을 두거나 이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요인에 관해 이루어져 왔다(전자배, 2018; 양영미, 2020; 조영선, 2019). 그러나 전영실(2012)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일부 비행유형에서는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높은 정도로 비행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처럼, 쉽게 범죄피해 대상이 되는 경향도 존재하기에 다문화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는 의미 있는 주제이다.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과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김원영(2020)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으며, 이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광혁(2009)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이 또래 친구들의 문화적 편견과 외모 차별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친구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움츠러드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들은 소수 집단으로서의 특성과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행피해 경험과 두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 학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다문화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행피해로 인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비행피해두려움을 검증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범죄두려움이 사회적 지지로 인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Killias(1990)에 따르면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할수록 범죄두려움을 많이 지각하며, Sacco(1993)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이 지각하는 범죄두려움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고 보고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사회적·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주로 학교라는 장소에서 또래와 한정된 인간관계를 맺으며 생활한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들의 범죄두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넓은 개념보다 비행피해로 인한 두려움으로 범위를 좁히고,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또래 친구 관계에 초점을 맞춰 검증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또래애착이 비행피해경험으로 인한 비행피해두려움을 매개하는지 검증해보겠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청소년 현황 및 비행피해 선행연구

1) 다문화 청소년

2021년 통계청에 집계된 다문화 학생은 16만 명으로 전체 초·중·고등학생 수의 3%를 차지한다. 이는 10년인 2011년에 총 38,000명으로 전체 학생의 0.55%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재학생 수는 저출산 영향으로 553만 명으로 감소한 것을 볼 때, 앞으로 다문화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접하는 비중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유형별로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76.3%(122,093명), 외국인가정 17.8%(28,536명), 국제결혼가정(중도입국) 5.9%(9,427명)이며, 부모의 출신 국적 별로는 베트남(32.2%), 중국(23.6%), 필리핀(10%), 중국동포(8.2%), 일본(5.2%), 기타(20.8%)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가 완전히 다문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 비행피해 실태 선행연구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피해 실태는 국내에서 주로 연구주체의 하위요인 중 하나로 조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영달(2006)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10명 중 2명 정도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했다고 보고 하였으며, 전경숙(2008)은 응답자의 15.7%가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과 따돌림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영실(2012)의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28%가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놀림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한 번 이상 있었다고 답했다. 괴롭힘, 따돌림, 비행에 대한 두려움 정도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드러났으며, 특히 중고등학생 집단보다는 초등학생 집단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일반 학생과 비행 유형별 피해 경험 여부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유형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나에 대한 안좋은 소문 퍼뜨리기’와 ‘따돌림’, ‘괴롭힘’, ‘폭행 위협’, ‘폭행 피해’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일부 결과가 유의했을 뿐, 전반적인 결과는 일반 학생과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일반 학생과 다문화 청소년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전체 비율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으나, 일반 학생은 그 이유가 다양한 것과 달리 다문화 청소년은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가 지배적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반 학생들이 인식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가능성에 관한 연구 결과, 인식된 피해 가능성은 실태보다 더 높다고 밝혀졌다. 고성혜 등(2008)에 따르면, 일반 학생 응답자의 57.3%가 다문화가정 학생이 일반 학생보다 돈이나 물건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했다. 전영실(2012)에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언어적 폭력에 관해서도 57.9%가 피해 가능성을 더 크게 인식했다, 즉, 다문화가정 학생이 일반 학생보다 여러 유형의 비행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선입견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2. 비행피해두려움

1) 범죄두려움

범죄두려움이란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 즉 기분이 다(조은경, 1977). 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범죄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범죄두려움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노성호(2013)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경험할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주장했고, 김차영(2021)은 뉴스를 통해 범죄 내용에 노출되는 것이 간접 외상을 매개로 하여 세상에 대한 신념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범죄두려움이 삶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해와서 해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범죄두려움을 현 연구의 종속변수로 삼아 해석의 대상을 확장해보고자 한다.

범죄두려움에 대한 이론적 모형 중 범죄피해 모형은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범죄두려움을 더 느낀다고 설명한다. Skogan(1986)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범죄에 대한 지각이 커지기 때문에 범죄피해경험이 범죄두려움의 중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령과 성별을 통제했음에도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범죄두려움을 더 느낀다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Garofalo, 1979). 국내 연구에서도 범죄피해경험이 범죄두려움에 강력한 예측변수임이 보고되었기 때문에(장안식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경험을 독립변수로 삼았다.

2) 취약성 모형

취약성 모형은 범죄피해 모형의 설명을 보충한다. 범죄두려움이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집단 외에도 범죄피해대상이 될 위험성, 범죄에 대한 대항력 등 사회적으로 범죄피해에 취약한 집단에서 더 가진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Baumer(1985)는 연령, 성별 등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 인한 취약성이 범죄 두려움의 원인을 잘 설명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강상훈(2015)은 성인보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은 범죄피해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인보다 범죄두려움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 선정을 지지해준다.

또한, 2015년 실시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전체 청소년의 약 2배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업 중단 이유로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 라는 응답이 18.3%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이유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 한다’ 라는 응답이 64.7%로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소수 집단에 속해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학교생활 적응 및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며, 여전히 단일민족 개념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보호 능력에서도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배경의 차이로 인해 외집단으로 분류되면서 다수에 의해 비교적 손쉽고 적절한 피해 대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취약성을 더 가지기 때문에 대상 선정에 의의가 있다.

3. 비행피해경험과 비행피해두려움, 또래애착의 관계

비행피해경험과 또래애착의 부적 상관에 관하여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 비행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친밀한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Bifulco, Schimmenti, Jacobs, Bunn & Rusu, 2014).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심각할수록 또래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오승아, 2017). 전영실(2012)은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친구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게 될 수 있고,

가장 가까이에서 비행피해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언급했으며, 박현수(2018)는 비행피해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사회적 지지와 범죄두려움의 상관관계는 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검증되었다. Sacco(1993)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안전 혹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으며, Kristin and Charle(2007) 역시 사회적 지지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다문화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는 부모, 교사, 또래의 지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또래 관계와 학교생활의 비중이 커지면서 또래에게서 얻는 지지의 중요성은 커지고(김현진, 2008), 친구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부모, 교사와의 관계와 달리 수평적인 관계로서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홍정은, 2006; 이운정, 2019 재인용). 따라서, 청소년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또래애착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또래애착이 비행피해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가능성 또한 연구를 통해 시사되고 있다. 박현수(2018)는 비행피해 당시나 이후에 자신을 지지해 줄 친구가 없는 것은 또래 비행피해 두려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으며, 강상훈(2015)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주변 학생들의 분위기에 따라 청소년들이 범죄피해에 대해 대응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내 구성원들 간의 유대와 신뢰도에 따라 청소년들의 범죄 대응 태도가 달라진 것인데 이는 또래 애착이 범죄두려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암시된 것이다. 윤성훈(2013)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구 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또래 괴롭힘을 중점적으로 검증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괴롭힘’ 뿐만 아니라 따돌림, 금품갈취, 협박 및 폭행에 대한 두려움 또한 검증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는 2012년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1세부터 19세까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인 청소년이었다. 한 문항이라도 미응답 시 분석에서 제외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79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주요변수 및 측정

1) 비행피해두려움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비행피해두려움이다. 학교가 주된 생활 장소인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한 범죄두려움보다는 비행피해두려움이 적합하다고 정의함에 따라(심수현, 2020) 구체적 비행유형에 대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측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행피해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괴롭힘 당할까봐 두렵다’, ‘친구나 선후배에게 괴롭힘 당할까봐 두렵다’, ‘친구나 선후배에게 따돌림 당할까봐 두렵다’, ‘친구나 선후배에게 맞을까봐 두렵다’, ‘친구나 선후배가 겁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뺏길까봐 두렵다’ 라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부터 ‘매우 그렇다’ (=5)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피해두려움 크기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hronbach’s α =.946).

2) 비행피해경험

비행피해경험 변수는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로서 “지난 1년 동안(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또래나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라고 측정된 것을 사용하였다. 비행피해경험 세부 내용으로는 “욕을 들은 적이 있다”, “못살게 굴거나 억지로 싫은 일을 시킨 적이 있다”.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 “일부러 내 물건을 망가뜨

린 적이 있다”, “따돌림 당한 적이 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괴롭힘당한 적이 있다”, “말 안들으면 때리겠다고 겁준 적이 있다”, “맞은 적이 있다.”, “때리거나 겁줘서 돈이나 물건을 빼긴 적이 있다” 총 9가지를 조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없었다’ (=1)부터 ‘7번 이상’ (=5) 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hronbach’s α =.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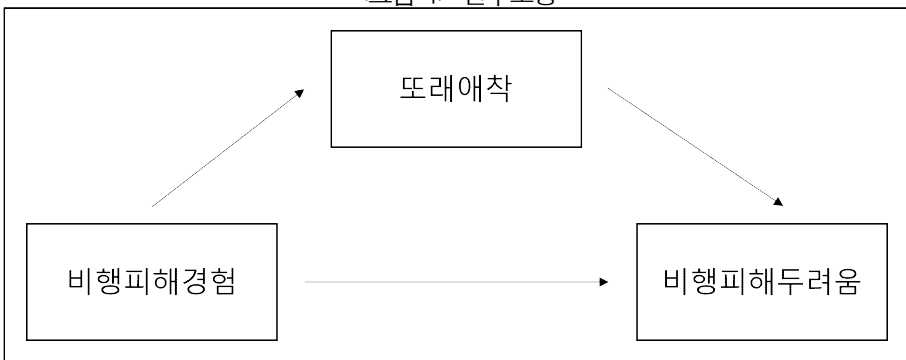
3) 또래애착

이 연구의 매개변수인 또래애착은 ‘내가 도움을 구하면 친구들은 나를 돕는다.’,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친구들에게 잘 얘기한다.’, ‘나는 친구들과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 라는 3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hronbach’s α =.893).

3. 연구 설계

이 연구의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피해경험과 또래애착, 비행피해두려움은 서로 유의한 상관을 가질 것이다. 둘째, 비행피해경험과 비행피해두려움의 관계를 또래애착이 매개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와 Process Macro v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비행피해경험이 비행피해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 (2013)의 Process Macro 분석 방법 중 매개 모형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의 샘플 수는 5,000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00명 중 결측치를 제외하고 총 795명을 분석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399명(50.2%)이 남학생이고, 396명(49.8%)이 여학생이었다. 연령 현황을 살펴보면, 12세가 214명(26.9%)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11세가 9명(1.1%)으로 가장 적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석

	항목	N	%
성별	남	399	50.2
	여	396	49.8
연령	11세	9	1.1
	12세	214	26.9
	13세	184	23.1
	14세	122	15.3
	15세	122	15.3
	16세	70	8.8

17세	24	3.0
18세	36	4.5
19세	14	1.8
전체	795	100

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측정 변인들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2>와 같다. 비행피해경험은 비행피해두려움($r=.282,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즉, 비행피해경험이 많아질수록 비행피해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애착($r=-.252, p<.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 즉, 비행피해경험이 많아질수록 또래애착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비행피해두려움은 또래애착($r=-.310,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비행피해두려움이 증가할수록 또래애착이 감소한 것이다.

<표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비행피해경험	비행피해두려움	또래애착
비행피해경험	1		
비행피해두려움	.282***	1	
또래애착	-.252***	-.310**	1

주: * $p<.05$, ** $p<.01$, *** $p<.001$

3. 비행피해경험과 비행피해두려움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비행피해경험이 비행피해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데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

증을 위해 Process Macro의 모델 4번을 사용하였으며(Hayes, 2013),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각 변수의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비행피해경험은 또래애착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0.461$, $t=-7.344$, $p<.001$), 비행피해두려움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0.389$, $t=6.381$, $p<.001$). 즉, 비행피해경험이 많을수록 또래애착은 감소하였으며, 비행피해두려움은 증가한 것이다. 또래애착은 비행피해두려움($B=-0.250$, $t=-7.495$, $p<.001$)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이 증가할수록 비행피해두려움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된 것이다.

<표 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매개변수의 매개효과

경로	<i>B</i>	se	<i>t</i>	<i>p</i>	LLCI	ULCI
비행피해 경험 → 또래애착	-0.461	0.063	-7.344***	.000	-0.584	0.337
비행피해 경험 → 비행피해 두려움	0.389	0.061	6.381***	.000	0.269	0.509
또래애착 → 비행피해 두려움	-0.250	0.033	-7.495***	.000	-0.316	-0.185

주: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비행피해경험이 비행피해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으며(Shrout & Bolger, 2002),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i>B</i>	se	LLCI	ULCI
총효과	0.505	0.061	0.385	0.624
직접효과	0.389	0.061	0.269	0.509
간접효과	0.115	0.027	0.069	0.174

분석 결과, 비행피해경험이 또래애착을 경유하여 비행피해두려움에 이르는 간접경로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115$, 95% *CI* [0.069-0.174]).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비행피해경험이 비행피해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유의한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피해경험은 또래애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친구들을 가깝게 느끼지도 않고 문제를 겪어도 이야기하지 않으며 도움을 청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학교폭력을 경험할수록 친밀한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하였다(Bifulco et al, 2014; 오승아, 2017). 또한, 또래애착은 비행피해두려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내 구성원들 간의 유대와 신뢰도가 범죄두려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강상훈(2015)의 주장을 지지한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 모형이 유의했다는 것은 비행을 당한 경험이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또래 간의 유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비행 피해자로서 다문화 청소년을 연구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연구는 기존까지 대부분 가해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이덕희(2010)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조사하였고, 유지웅(2009)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일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학업 중도 이탈, 언어소통과 학업의 어려움, 취약한 경제적 기반, 편견과 따돌림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이러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비행의 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피해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나 발달 단계상 또래 역할의 비중이 가장 커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이 피해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또래 애착의 기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 인식 교육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전영실 외(2012)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

해 언급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 청소년과 달리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괴롭힘·따돌림 피해 요인 모형에서 분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괴롭힘이나 따돌림 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분노 감정을 갖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Monks et al.(2008)에서도 개인적 특성에 기반한 피해보다는 문화적 배경에 기반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 분노가 더 크다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치유하는 자원의 일환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을 고려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문화적 배경에 기반하는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비행피해로부터의 보호자를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참가자들의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 수준 등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들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이 있다. 가정환경과 부모 애착, 출신 국가 등 적응에 영향을 미쳐 또래 애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괴롭힘과 폭행, 금품갈취 등 비행피해의 여러 유형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비행의 종류에 따라 피해 경험이 피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상훈. (2015). “청소년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고성혜·정진희·이미선. (2008). “학교폭력 피해자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교육부. (2018).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 김광혁. (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27-45.
- 김원영·정나은.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적 탐색”, 「교육연구논총」, 41(4): 257-289.
- 김재엽·이근영 (2010).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121-149.
- 김차영·박혜경. (2021). “n번방 사건에 관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의 관계: 간접 외상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3): 237-258.
- 김현진. (2008).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노성호. (2013). “범죄피해, 범죄의 두려움과 청소년의 삶의 질”, 「피해자학연구」, 21(1): 83-110.
- 류승아. (2016). “청소년들의 과거 비행피해 경험과 공동체 의식이 정서 및 신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청소년학연구」, 23(11): 87-111.
- 박현수. (2018).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2): 91-122.
- 심수현·김세령·노성훈. (2020).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두려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4(1): 21-37.

- 양영미·이선영. (2020). “부모의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축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4): 129-149.
- 양혁·양나연·김은주·김보영. (2019). “비행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비행 및 비행가해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9(12): 673-691.
-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_____. (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 오승아·김정희. (2017). “초등학생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 부모-자녀상호작용,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구”, 「어린이미디어연구」, 16(4): 157-179.
- 유지웅. (200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이탈요인”, 치안정책연구소
- 윤성훈.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관계 스트레스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문화연구」, 4(2): 23-43.
- 이덕희.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5(3): 77-96.
- 이윤정. (2019).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교사·친구지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2): 1197-1210.
- 장안식·정혜원·박철현 (2011).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한 새로운 접근”, 「형사정책연구」, 87: 291-326.
- 전경숙. (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 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1)
- 전영실·신동준·박상희·김일수.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32.
- 전자배. (2018).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응 태도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11(3): 121-146.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선·조영일.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집단에 대한 종단적 변화 유형 및 심리사회적 특성”, 「인문사회 21」, 10(5): 325-340.

조은경. (1997).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11(2): 29-51.

〈국외문헌〉

- Baumer, T. L. (1985). “Testing a general model of fear of crime: data from a national sample” ,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2(3): 239-255.
- Bifulco, A., Schimmenti, A., Jacobs, C., Bunn, A., & Rusu, A. C. (2014). Risk factors and psychological outcomes of bullying victimization: A community-based study. *Child Indicators Research*, 7(3): 633-648
- Garofalo, J. (1981). “The fear of crime: Causes and consequences” ,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2(2): 839-857.
- Monks, Claire P., R. Ortega-Ruiz & A.J. Rodríguez-Hidalgo. (2008). “Peer Victimization in Multicultural schools in Spain and England,”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4): 507-535.
- Sacco, V. F. (1993). “Social support and the fear of crime” .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Volume*, 35(2): 187-196.
- Skogan, W. G. (1986). “Fear of crime and neighborhood change” , *Crime and Justice*, 8: 203-229.
- Williams, P., & Dickinson, J. (1993). “Fear of crime: Read all about it?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paper crime reporting and fear of crime” ,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3(1): 33-56.

【Abstract】

The Effect of Victimization of Peer Violence on Adolescent Fear of Crim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Jihyeong Lee*

In-Soo Moon**

As of 2021, a total of 160,000 multicultural teenagers accounted for 3% of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signaling changes in the educational field. However, existing research on multicultural youth focuses on cultural adaptation, so it is not easy to find research on how victimization of peer violence affects life and how the resulting negative effects can be reduced. This study examined whether peer attachmen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of peer violence experience and fear of crime using data on 800 multicultural adolescents at the Korea Institute for Criminal Policy in 2012.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experience of victimization of peer violence, fear of crime, and peer attachment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ach other. Second, peer attachmen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fear of crime. This means that peer attachment significantly reduces the negative effect of victimization experience on fear of crime.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ortance of peer attachment in the aftereffects of victimization experience was discuss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expanded the study of victimization targeting ordinary adolescents to multicultural adolescents so far, verified the effect on crime fear mainly targeting adults, and identified factors that effectively reduce fear.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adolescent fear of crime, peer attachment, mediating effect

*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Youngsan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차별 가해경험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 소 연* · 박 희 군**

【요 약】

차별은 이전부터 만연하였던 사회적 문제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서야 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차별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차별이 곧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차별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긴장을 발생시켜 일탈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차별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긍정적인 요인인 자아존중감의 조절변수를 투입하여 차별 가해경험이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에는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6,271개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차별 가해경험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자아존중감은 차별 가해경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차별 가해경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차별, 자아존중감, 일반긴장이론, 일탈행위

*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범죄학 전공 석사과정(제1저자)

**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조교수(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분석 결과
V. 결 론

I.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혐오와 차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hate crime)’가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급증하게 되면서 그 심각성이 우리 사회에 더욱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혐오범죄는 차별과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으로 설명되고 있다(배정환, 2021). 이에, 미국에서는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에서 인종과 성별 차별 금지를 계기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었다(이상현,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사회 내에서는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 및 차별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차별이 중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차별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등에 대한 차별이 예전부터 만연해왔다. 정규형(2016)에 따르면, 차별은 “또래 집단 내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행위와 태도”로 정의되고 있다. 최근에서야 여성차별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의 활동이 증가 되었고, 다양한 인권교육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차별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논의만 되고 있을 뿐,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홍성수, 2018), 여전히 사회에는 차별이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다(차유정·황의갑, 2017). 특히, 최근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른 ‘수저계급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청소년들에게도 확산되었다(김혜원·조혜영, 2021).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차별태도는 외모, 신체조건 등으로 차별을 하여 따돌림 혹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정규형, 2016), 청

소년기에 생기는 차별 태도와 경험은 생애 전반에 걸쳐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기 때부터 차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주장되고 있다(홍기혜, 2019). 우리 사회는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 자체에 초점을 둔 차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차별 가해에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차별 피해경험 혹은 부모·교사·또래친구의 폭력 피해의 영향으로 차별 가해를 더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김영기, 2020; 정규형, 2016; 차유정·황의갑, 2017).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 피해가 차별 가해에 미치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청소년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되고, 동시에 학교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최은선·박남제, 2021),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이 우리사회에 대두되었다. 실제로,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3.5%p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 이러한 사이버폭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이버폭력의 피해도 함께 증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 겪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특히 일탈 혹은 비행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일탈행위로 간주되는 차별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부정적 자극의 존재는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부정적 감정을 발생시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서는 긴장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건적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김현정·황의갑, 2011). 이 조건적 요인에는 자아존중감이 포함되어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차별 가해경험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차별에 대한 예방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일반긴장이론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은 기존 Merton의 긴장이론의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제시된 이론이다. 기존의 긴장이론은 하위계층의 비행에 중점을 두어 중산층 이상의 비행과 범죄를 고려하지 않는 점, 사회계층 외 다른 성취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점, 그리고 긴장을 겪는 모든 사람들 중 왜 일부만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쇠퇴되었다(Brown et al., 2015). 이에 Agnew는 기존의 긴장이론을 확대하여 비행 또는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의 긴장 유발 요인들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원하는 목표달성의 실패, 둘째, 긍정적 자극의 제거, 셋째, 부정적 자극의 존재이다(Brown et al., 201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표달성의 실패로부터 발생하는 긴장은 개인이 쏟은 노력에 비해 타인과 비교하였을 때 그 결과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긴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Brown et al., 2015). 두 번째 유발 요인인 긍정적 자극의 제거는 개인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극이 소실되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우울, 분노, 좌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이를 표출하기 위해 비행 또는 범죄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Agnew, 1992, 김현정·황의갑, 2011; 조운오, 2013).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인 부정적 자극의 존재는 개인에게 긴장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거나 부정적 자극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비행 혹은 범죄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Agnew, 1992; 권나현, 2003; 김현정·황의갑, 2011). 하지만,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긴장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 혹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비행을 저지른다고 한다(김현정·황의갑, 2011). 이러한 조건적 요인들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도덕적 신념 등을 포함하고 있다(권나현, 2003; 문병욱·신동준, 2008; 이성식, 2004; 김현정·황의갑, 2011).

조운오(2013)의 연구에서는 일반긴장이론을 근거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의 비행 관계에서 우울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같은 부정적인 자극은 우울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발생시키고, 이는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을 근거하여 부정적 자극에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차별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조건적 요인에 포함되는 자아존중감이 두 변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1)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차별 가해경험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비물리적인, 예를 들어 이미지, 언어 등을 통해 타인에게 정신적 및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준영 · 이창배, 2021). 이러한 사이버폭력에 관련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차별 가해경험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일탈 행위 또는 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 차별 가해행동을 일탈의 한 유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김혜영과 민정식(2014)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폭력의 피해경험은 가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일탈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세현과 신지혜(2021)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134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 가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일탈행위에 관한 연구가 존재한다. Graham과 Wood Jr.(201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탈행위, 예를 들어 음주, 마약복용, 다수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건강을 위협하는 일탈행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높을수록 일탈행위의 수준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아존중감과 차별 가해경험

자아존중감은 통상적으로 자신이 인식하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로, 자신의 가치가 높다고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심리학, 상담학,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범죄학 분야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혹은 일탈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정익중, 2006). 자아존중감과 차별 가해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는 현재 연구가 미비하지만, 자아존중감과 비행 혹은 일탈행위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자아존중감과 차별 가해경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김희경 외(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흡연행위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흡연행위의 한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일탈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지숙(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탄력성 이론의 자산요인을 근거하여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이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자아존중감과 차별 가해에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Jordan과 그의 동료들(2005)은 자신이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개인이 상대적으로 낮게 내재된 자아존중감으로 인한 방어적 기법으로 민족적인(ethnically) 차별을 하는지 혹은 덜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자들의 예측대로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졌다고 보고한 개인의 내재된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민족적 차별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재되어있는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차별 가해를 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차별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와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차별 가해경험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차별 가해경험과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차별 가해경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8년에 발간한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총 9,060명이 수집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자료를 제외하였고, 결측치가 존재하여 이 또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는 6,271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주요변수 및 측정

1) 종속변수: 차별 가해경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차별 가해경험이다. 연구 대상자들의 차별 가해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활용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문항은 총 10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자 또는 여자라

는 이유로 차별한 적 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시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다문화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측정에는 5점 Likert 척도(“1=한 번도 없음, 2=일 년에 1-2회 정도, 3=2~3개월에 1-2회 정도, 4=한 달에 1-2회 정도, 5=1주일에 1-2회 이상”)를 활용였고,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차별 가해경험 정도가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cronbach's $\alpha = .843$).

2) 독립변수: 사이버폭력 피해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다.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피해경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활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문항은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를 5개의 하위문항으로 나누어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협박을 당함’, ‘성희롱(놀림)을 당함’,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카톡 등),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의 피해 내용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에는 5점 Likert 척도(“1=한 번도 없음, 2=일 년에 1-2회 정도, 3=2~3개월에 1-2회 정도, 4=한 달에 1-2회 정도, 5=1주일에 1-2회 이상”)를 활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ronbach's $\alpha = .709$).

3) 조절변수: 자아존중감

이 연구의 조절변수는 자아존중감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하였다. 문항은 4개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자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를 역코딩하였고,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를 활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ronbach's $\alpha = .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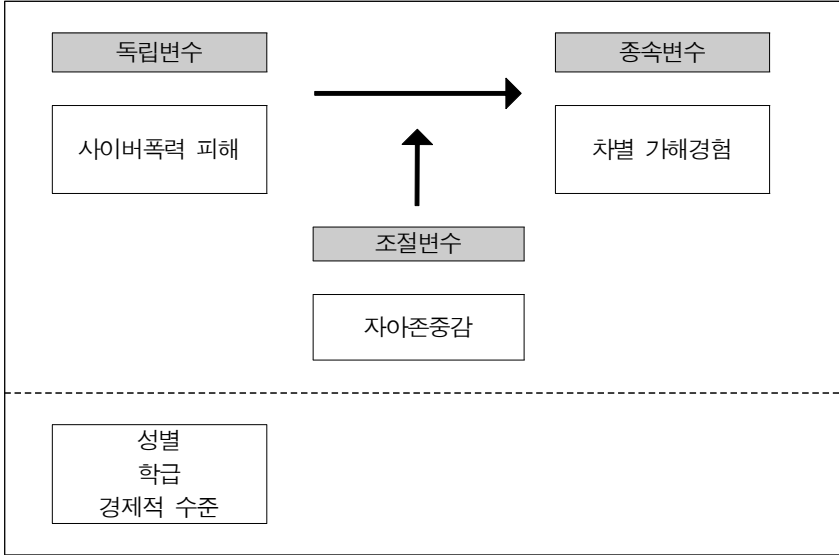
4) 통제변수

이 연구의 통제변수는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학급, 경제적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성별의 경우 ‘0=여성’, ‘1=남성’으로 더미변수화하여 재코딩하였고, 학급의 경우, ‘0=중학교’, ‘1=고등학교’으로 재코딩하였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원자료에서 ‘1=상’, ‘2=중’, ‘3=하’로 코딩되어있는 것을 더미변수화하여 ‘0=상’, 그 외는 “1”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차별 가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파악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의 연구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4. 분석 방법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23.0 ver.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사이버폭력 피해가 차별 가해경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되는지 검증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3,266명(52.1%), 여성은 3,006명(47.9%)으로 남성 응답자가 근소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급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뉘는데, 중학생은 전체의 45.2%, 고등학생은 54.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가 약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경제적 수준은 ‘상’, ‘중’, ‘하’로 나누어 응답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가정 형편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자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3,037명(48.4%)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 (39.3%), ‘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
성별	남	3,266	52.1
	여	3,006	47.9
학급	중학생	2,836	45.2
	고등학생	3,436	54.8
경제적 수준	상	3,037	48.4
	중	2,467	39.3
	하	767	12.2

2. 주요변수의 특성

이 연구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차별 가해경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하였다. 이 연구의 예측변수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평균은 5.62($sd=1.82$)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차별 가해경험의 평균은 11.05 표준편차는 2.85로 나타났다. 즉, 이 변수 또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차별 가해를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은 11.75($sd=2.81$)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체적으로 응답자들 스스로 인식하는 자아존중감이 보통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주요변수의 특성

변수	min	max	평균	표준편차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5	25	5.62	1.82
차별 가해경험	10	50	11.05	2.85
자아존중감	4	16	11.75	2.81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이 연구의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결과에 따르면, 성별은 경제적 수준 중 집단($r=-.054$, $p<.01$)과 경제적 수준 하 집단($r=-.043$,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사이버폭력 피해경험($r=.040$, $p<.01$)과 자아존중감($r=.154$,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중, 성별은 자아존중감과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의 경우, 경제적 수준의 중 집단($r=.064$, $p<.01$) 및 하 집단($r=.092$,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사이버폭력 피해경험($r=-.027$, $p<.05$)과 자아존중감($r=-.074$,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 중 집단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r=-.106$, $p<.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 하 집단의 경우에는, 경제적 수준 중 집단과 달리, 사이버폭력 피해경험($r=.050$, $p<.01$)과 차별 가해경험($r=.058$,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경제적 수준 하 집단과 자아존중감은 경제적 수준 중 집단과 마찬가지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r=-.150$, $p<.01$).

다음은 이 연구의 예측변수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r=-.094$, $p<.01$)가 나타났으며, 차별 가해경험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271$, $p<.01$). 구체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차별 가해경험과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는 차별 가해경험과 부(-)적 상

관관계를 보여주었다($r=-.086, p<.01$).

<표 3>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V1	V2	V3	V4	V5	V6	V7
V1	1						
V2	.003	1					
V3	-.054**	.064**	1				
V4	-.043**	.092**	-.301**	1			
V5	.040**	-.027*	-.012	.050**	1		
V6	.154**	-.074**	-.106**	-.150**	-.094**	1	
V7	.003	.022	-.019	.058**	.271**	-.086**	1

주: * $p<.05$, ** $p<.01$

V1=성별, V2=학급, V3=경제적 수준-중, V4=경제적 수준-하 V5=사이버폭력 피해경험, V6=자아존중감, V7=차별 가해경험

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차별 가해경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1단계에서는 이 연구의 통제변수인 성별, 학급, 경제적 수준을 투입하여 차별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2단계에서는 이 연구의 예측변수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여 차별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마지막 최종단계에서는 예측변수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평균중심화하여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후,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단계($F=5.816, p<.001$), 2단계($F=89.962, p<.001$), 3단계($F=77.441, p<.001$)의 회귀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변수가 포함된 회귀모형은 그렇지 않은 회귀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

하지 않았다($\Delta R^2=.000$, $F(6,271)=2.236$, $p=.137$).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는 경제적 수준 하 집단($\beta=.056$, $p<.001$)과 차별 가해경험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경제적 수준 상 집단에 비해 하 집단은 차별 가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2단계에서는 성별, 학급, 경제적 수준을 통제하였을 때, 예측변수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차별 가해경험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265$, $p<.001$). 즉,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높을수록, 차별 가해경험도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도 2단계 회귀모형에 투입되었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아존중감과 차별 가해경험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057$, $p<.001$).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차별 가해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차별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보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차별 가해경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과 차별 가해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beta=.019$, $p=.137$). 즉,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차별 가해경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조절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b (S.E)	β	b (S.E)	β	공차	VIF	
통제 변수	성별	.032 (.072)	.006	.012 (.070)	.002	.011 (.070)	.002	.970	1.031
	학급	.099 (.073)	.017	.134 (.070)	.023	.133 (.070)	.023	.978	1.022
	경제적 수준 - 중	-.019 (.078)	-.003	-.086 (.075)	-.015	-.084 (.075)	-.014	.877	1.140
	경제적 수준 - 하	.485 (.116)	.056***	.258 (.113)	.030*	.260 (.113)	.030*	.864	1.157
독립 변수	사이버 폭력 피해			.414 (.019)	.265***	.423 (.020)	.271***	.893	1.119
	자아존			-.058	-.057***	-.058	-.057***	.923	1.084

[Provider:article] Download by IP 210.94.174.164 at Monday, February 6, 2023 1:55 PM

증감		(.013)	(.013)
상호 작용	사이버 폭력 피해 X 자아존 증감		.010 (.006) .019 .906 1.104
R^2	.004	.079	.080
ΔR^2	.004	.076	.000
ΔF	4.296**	258.859***	2.236
F	5.816***	89.962***	77.441***

주: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관계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근거하여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차별가해에 영향을 미치고, 그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수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차별 가해경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차별 가해경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연구의 조절효과인 자아존중감과 차별 가해경험은 부(-)적 영향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차별가해 경험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사이버폭력 피해와 차별 가해경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차별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차별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 점을 시사하였다.

먼저, 연구결과에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차별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한바,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 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먼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사이버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아 윤리적 사고를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남미주·김정효·황은경, 2021; 오세현·신지혜, 2021). 이에 따라 학교 내에 상담사나 사회복지사를 통해 윤리적 사고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오세현·신지혜, 2021).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이 피해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일탈행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자기통제력 강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일반 긴장이론에 의하면 부정적 경험은 긴장을 발생시키고, 이는 곧 일탈행위 또는 비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Agnew, 1992). 이에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을 위해 자기통제력을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탈로 이어지지 않게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 아이의 피해경험에 공감할 수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킬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로, 청소년들이 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인권교육도 실시되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빈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정규형, 2016). 하지만, 정규형(2016)의 연구에 따르면, 인권교육 빈도는 차별 피해경험과 차별 가해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히 인권교육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인권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에 수준 높은 인권교육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한 인권교육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준에 맞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기에 차별 같은 일탈행위 예방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요인인 것을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외의 Garaigordobil와 Martínez-Valderrey(2015)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스페인의 Cyberprogram 2.0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Cyberprogram 2.0은 학교 기간 동안 한 시간 교육을 총 19번을 받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프로그램은 4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을 확인하고 개념화하고, 둘째,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는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기술을 발전시키고, 마지막으로 동정

심, 사회화 기술, 충동성 조절 능력 등의 개인의 긍정적인 기능들을 획득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Cyberprogram 2.0은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araigordobil 외, 2015).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의무교육하여 사이버 공간의 폭력을 포함한 일탈 행위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청소년기 경험하는 차별 가해를 파악한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정적 경험이 차별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차별 가해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발견한 것은 차별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이 연구의 설문지는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청소년이 차별 가해에 대한 응답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차별 가해 경험에 대한 응답이 대부분 ‘한 번도 없음’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응답도 ‘한 번도 없음’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의 편파적인 응답의 분포로 인해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차별 가해 관계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청소년에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이 연구는 2차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측정이 단순하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측정문항들을 더 세분화하여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더 신뢰성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차별 가해경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아닌 다른 요인들과 차별 가해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바,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차별 가해경험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준영·이창배. (2021).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의 영향요인: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시큐리티 연구」(68): 237-257.
- 권나현. (2003). “일상에서의 긴장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일반긴장이론의 검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영기. (2020).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폭력피해 경험이 인권의식을 매개로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15(3): 393-404.
- 김현정·황의갑. (2011). “자살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5(1): 75-110.
- 김혜영·민정식. (2014).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온오프라인폭력 피해경험 및 소셜미디어 중독, 자기통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8(4): 323-333.
- 김혜원·조혜영. (2021).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차별가해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우울, 차별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5: 38-67.
- 김희경·강현숙·김희경·강현숙·고연화·문선순·박연숙·신연순·안정선·이선영·이성옥·이양숙·조순자·최은숙. (2002). “청소년 흡연행위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2): 376-386.
- 남미주·김정효·황은경. (2021). “초등 도덕과 정보윤리 교육과정 및 교과서 변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 661-690.
- 문병욱·신동준. (2008).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연구 - 긴장요인으로서의 자녀학대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7: 295-306.
- 배정환. (2021). “코로나 시대, 미국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범죄: 인종주의 담론과 사회 통제에 관한 논의”. 「경찰학연구」, 21(3): 183-208.
- 오세현·신지혜. (202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와 부모

- 에착의 조절효과” . 「청소년문화포럼」, 68: 6-32.
- 이상현. (2020). “미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 사례연구” . 「교회와 법」, 7(1): 186-207.
- 이성식. (2004). “청소년들의 긴장, 부정적 감정의 경험과 사이버공간에서의 비행”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274-283.
- 정규형. (2016). “청소년의 차별피해경험이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 인 권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55): 31-55.
- 조운오. (2013). “사이버불링 피해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우울감의 매개효과” . 「청소년학연구」. 20(10): 117-142.
- 차유정 · 황의갑. (2017). “차별과 학대경험이 차별가해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감정의 매개효과” . 「한국범죄심리연구」, 13(3): 135-154.
- 최은선 · 박남제. (2021).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학교 사이버폭력 대응에 대 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타당성 연구” . 「정보보호학회 회 문지」, 31(5): 1071-1082.
- 홍기혜. (2019). “청소년에게 인지되는 차별피해가 차별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차별목격과 차별감수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 연구」, 27(1): 33-66.
- 홍성수. (2018).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이화젠더법학」, 10(3): 1-38.

〈국외문헌〉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 *Criminology*, 30(1), 47-88.
- Brown, S. E., Esbensen, F. A., & Geis, G. (2015). *Criminology, ninth edition: Explaining Crime and Its Context*, New York: Routledge
- Garaigordobil, M. & Martínez-Valderrey, V. (2015). “The Effectiveness of Cyberogram 2.0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Self-Esteem” .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7(2), 229-234.
- Graham, R. & Wood Jr., F. R. (2019) “Association betwee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Deviant Health Risk Behaviors” . *The Social Science Journal*, 56(2):183-188.
- Jordan, C. H., Spencer, S. J., & Zanna, M. P. (2005). “Types of High

Self-Esteem and Prejudice: How Implicit Self-Esteem Relates to Ethnic Discrimination Among High Explicit Self-Esteem Individuals”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5), 693-702.

【Abstract】

The Impact of Victimization of Cyber-bullying in Adolescence on Discrimina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So Youn Chung*

hee kyun Park**

Discrimination has been a prevalent social problem before, but it has been recently recognized in the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as discrimination has been prevalent among adolescents, such discrimination has led to serious school violence. Based on Agnew's (1992) general strain theory,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of cyber-bullying in adolescence and perpetration of discrimination, which can be regarded as a deviant behavior has been tried to analyze. Also,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has been examined. A total of 6,271 data were used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s a result of conduct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moderating effect, the cyber-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s have a positive(+) impact on perpetration of discrimination, whereas self-esteem has a negative(-) impact on it.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ization of cyber-bullying and perpetration of discrimin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s.

Key Words: victimization of cyber-bullying, discrimination, self-esteem, general strain theory, deviant behavior

*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_Seoul Graduate School(first author)

** Assistanc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Semyung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과 진술평가자 요인: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을 중심으로

황 선우* · 주영빈** · 조은경***

【요약】

성폭력 사건은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진술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술분석의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CBCA를 비롯한 진술분석 도구는 구조상 진술의 양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다. 한편, 아동의 진술은 성인의 진술에 비해 편차가 크고, 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평가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의 진술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아동 관련 변인과 진술을 평가하는 평가자 변인으로 나누어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피해자 수사 및 진술분석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아동 성폭력, 아동 피해자 진술, 진술분석, 범죄예방, CBCA

*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제1저자)

**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공동저자)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교수(교신저자)

목 차

- I. 서 론
- II. 아동 성폭력 사건과 CBCA
- III.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IV. 결 론

I. 서 론

최근 성폭력 사건 신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압수 범죄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신고 과정에서 범행 내용에 관해 진술하면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친족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특히, 강간(19.4%) 및 유사강간(16.0%) 사건의 경우 그 비율이 높는데(김지영, 황지태, 최수형, 김현아, 2018). 자신을 부양하는 이를 신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또한, 2000년대 이후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예: 고학년에게 의한 저학년 강간)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 생활의 영위를 위해 신고를 꺼려한다(이운호, 이금형, 2007). 그나마 신고되는 경우에도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물적 증거의 부재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유무죄가 판결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실무적으로 경찰청에서는 ‘진술분석전문가 의견 작성 매뉴얼(2017)’을 마련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의 면담과 분석을 규격화하였다. 진술분석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이하 CBCA)과 현실 모니터링(Reality Monitoring)등의 세부기법들이 경찰의 매뉴얼에 명문화되었으며 수사관들이 이러한 기법들에 대해 교육받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경찰청, 2017). 대검찰청에서는 2004년 성폭력특별법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에 대한 394건의 진술 분석이 이루어진 이래로, 2006년 대검찰청에서 진술분석을 위한 과학수사팀이 만들어지며 진술분석이 실무에 본격 활용되었고,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 센터에 13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진술분석팀이 운영되어 아동과 장애인 대상의 성범죄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박중선, 2016), 경찰에서는 2010년부터 진술분석전문가 참여제도를 도입하여 각 지방청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약 101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김한균 외, 2018).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 모두 실무에서 진술분석을 활용하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진술분석에 피해 아동과 진술분석 평가자의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Nahari, Glicksohn, & Nachson, 2010; Granhag & Stromwall, 2012; Vrij, 2005). 특히, 진술하는 아동이나 진술 평가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진술분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Vernham 등, 2020)는 진술분석에 대한 신뢰도에 의심을 초래하여 진술분석 결과의 법정 활용을 제한되게 만들 수 있다. 아동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제한된 언어능력으로 인해 진술의 양이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어린 아동의 경우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의 개수는 6세 아동 기준으로 평균 6-8천개 수준으로 성인에 비해 어휘 구사력이 떨어진다고(이승진, 2012). 이는 곧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져 진술이 단조롭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무에서 활용되는 진술분석 준거에 따르면 양적 혹은 질적으로 부족하게 평가되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문헌에서는 국내의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술분석, 그 중에서도 실무적 활용도가 가장 높은 CBCA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들을 탐색할 것이다. 먼저, CBCA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 아동과 평가자의 요인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피해 아동과 평가자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아동 성폭력 사건과 CBCA

1.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술분석 기법의 도입

과거 성폭력 특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였다(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그러나 당시에는 전문가 의견 조회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경찰청, 2017). 이에 전문가에 의한 진술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 특례법(법률 제10258호)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제33조 제4항 본문) ‘진술분석 전문가 참여제’가 탄생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술분석 전문가는 사건 관계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언어적 거짓을 탐지하기 위해 진술 신빙성 평가를 실시하며 구체적으로는 범심리학적으로 검증된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과 ‘진실 모니터링(RM)’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두 기법은 경찰에 의해서도 인정되었으며 ‘경찰청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작성 매뉴얼(2017)’로 명문화되어 있다. 본 문헌에서는 두 기법 중 실무적 활용도가 높고, 경험적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된 CBCA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CBCA는 본래 아동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다(Honts, 1994; Horowitz 등, 1997; Vrij, 2002). CBCA는 “실제 경험한 사건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나 상상에 의한 진술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르다”는 Undeutsch(1967)의 가설을 기반으로 Steller와 Kohnken(1989)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총 19개의 준거로 이루어져 있다(Vrij, 2002).

CBCA 준거는 <표 1>의 내용과 같다. 본 문헌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CBCA 준거의 특징은 평가 과정에서 진술의 양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CBCA에는 Amado 등(2015)에 의해 가장 유의미한 지표로 여겨지는 세부내용의 풍부함(3번)을 비롯하여 맥락상 깊이(4번)와 같이 진술의 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준거들이 배치되어 있다. 나머지 준거들 역

시 최소한의 양이 전제되어야 준거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즉, 빈도 방식으로 평가하든 척도 방식으로 평가하든 준거에 부합하는 하나 이상의 표현이 등장해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표 1> CBCA 준거 및 준거 설명

범주	준거	준거 설명
1. 일반 특성	1. 논리적 일관성	진술의 일관성과 통일성
	2. 구조화되지 않은 표현	진술이 표현방식의 자연스러움
	3. 세부내용의 풍부함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등의
2. 내용 특성	4. 맥락상 깊이	사건 맥락 정보가 풍부하게 제시
	5. 상호작용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행동과 반응
	6. 대화의 재현	사건 당시 대화를 직접적으로 인용
	7. 사건 중 예기치 않은 일 발생	사건 중 예상치 못한 중단, 어려움, 자발적 종료
	8. 독특한 세부내용	사건에 대한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내용
	9. 부가적인 세부내용	사건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세부 묘사
	10. 정확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내용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설명
	11. 관련된 외적 연합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사건 발생 가능성 시사
	12. 주관적인 심리상태 묘사	피해자 자신의 생각 또는 정서 표현
	13. 가해자의 정신상태 귀인	가해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추론
	14. 자발적인 수정	자신의 진술을 자연스럽게 수정
3. 동기 특성	15. 기억의 부족 시인	기억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정
	16. 자기 진술의 의심 제기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려
	17. 자기비난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혐의를 초래할 수 있는 진술
4. 사건 특성	18. 가해자 용서	가해자 행동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용서해주는 진술
	19. 범죄 특징에 대한 세부 내용	특정한 범죄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술

주. 준거 및 준거 설명은 이미선(2020)의 내용을 인용함.

Ⅲ.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는 CBCA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각종 문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CBCA는 진술의 양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아동의 언어적·인지적 특성과 성폭력 사건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아동의 진술은 양적 측면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언어 및 인지적 특성이 CBCA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외에 아동이 진술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적 특성에 관한 문헌을 탐색한 뒤,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성폭력 피해 아동 관련 요인

1) 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거짓 탐지 관련 연구 및 기억 관련 연구에서 연령은 자주 등장하는 개인차 요인 중 하나이다. 우선, 연령은 진술의 길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응답의 진실성 여부와는 별개로 어린 아동의 응답은 더 나이 많은 아동이나 성인에 비해 응답의 길이가 짧은 경향이 있음을 선행연구들은 보여주었다(Connolly 등, 2008; Warren 등, 2018; Williams 등, 2014; Wyman 등, 2018). 진술의 길이는 곧 진술 속 정보의 양으로 이어지며, 정보의 양은 CBCA 평가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연령과 CBCA 총점 간 상관관계를 다룬 국내외 논문을 살펴본 결과, Vrij(2005)의 메타분석에서는 37개의 해외 문헌에서 CBCA 총점과 연령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는 조은경(2004)이 실제 성폭력 피해 아동 자료를 바탕으로 CBCA 총점과 연령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연령과 CBCA 총점 사이에 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반복검증 되었다. 해당 결과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주로 아동기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되는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을 통해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즉, 연령의 증가에 따른 아동의 능력 향상이 진술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며 CBCA 총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정량적으로 가르는 CBCA 점수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진술분석 전문가들이 CBCA 점수를 먼저 매기며, 신빙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하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능력과 인지적 능력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가. 언어능력

언어능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언어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기억한 내용의 세부 사실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Davies, 1991, 1994; Vrij, Akehurst, Soukara, & Bull, 2002). Piaget의 아동 언어 발달 이론에 따르면 아동의 언어 능력은 8세까지 증가하며, 8세에 이르면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한다(이승진, 2012). 이는 역으로 말하면 8세 전까지 아동의 언어는 성인의 언어에 비해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표현상 제약이 발생하여 진술의 양과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CBCA 점수가 저하될 소지가 있다.

어휘적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어린 아동들은 특정 어휘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곤 하며, 때로는 같은 어휘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Bruck, 2009; 이승진, 2012). 예컨대, 아동 성폭력 사건 녹취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만지다’라는 동사는 보편적 의미가 아닌 ‘문지르다’ 혹은 ‘할퀴다’와 유사한 의미로 표현된 것일 수 있으며, ‘만지다’라는 표현이 중복되어 등장할 때 각각의 의미에 보편적 의미와 특수한 의미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 이는 CBCA 점수 평가에 있어서 중복 코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만졌어요”라는 두 개의 진술이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는 진술일 수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동일하기에 CBCA 상에서는 1회만 코딩되기 때 문이다. 즉, 아동의 어휘적 특수성으로 인해 아동의 진술이 더욱 빈약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나. 인지적 능력

다음으로, 인지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동은 인지적 제한과 보편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피해 아동은 언어적 능력의 부족으로 진술이 빈약해지기도 하지만,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해야 스스로에게 유리한지 몰라 진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아동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 부분에 초점되지 않아 산발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사건의 핵심 부분에 관한 진술이 풍부해질수록 진술 분석 시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의 인지적 능력 부족은 언어능력의 부족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진술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경우, 기억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인간이 접한 장면은 부호화와 저장의 과정을 거쳐 장기 기억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부호화와 저장은 사전 지식과 통합하여 이루어진다. 스스로가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전 지식은 부호화와 저장의 강도를 높이고, 사후 인출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이승진, 2016). 예컨대, 법적 맥락에서 진정한 피해자는 범죄 구성요건의 핵심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범죄 사실의 핵심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사전지식과 함께 인지능력이 발달하게 되면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지고, 핵심 내용을 진술하는 능력이 높아질 것이다. CBCA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연령의 증가는 진술의 양적·질적 개선으로 이어져 CBCA 준거 점수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연령 아동은 부족한 사전 지식으로 인해 범죄 사실의 주요 정보를 상대적으로 기억하기 어렵고, 나이든 아동에 비해 불리한 CBCA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인지적 능력은 기억 외적인 부분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이가 어린 아동이 사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은 표현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기억이나 능력과는 별개로 아동들은 자신의 진술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인상을 남기는가에 대해 신경을 덜 쓰기에 진술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Flavell, Botkin, Fry, Wright, & Jarvis, 1968; Vrij, 2002). 달리 말하면, 어린 아동은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축약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Vernham et.al, 2020). 즉, 똑같은 양을 기억하고 있고, 언어능력이 같다는 전제 하에서도 어린 아동은 스스로의 역량에 비해 적은 진술을 하게 되어 CBCA 평가 상 불리한 점수를 받게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 부모의 반응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는 아동의 내적 특성과 결합하여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의 경우,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초기 진술 시 양육자, 특히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진술을 취소하기도 하는데 이를 철회(recantation)라고 한다(이승진, 2016). 철회는 일반적으로 아동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법한 사건에 대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때로는 아동이 어떠한 행위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다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철회를 선택한다(Palmer, Brown, Rae-Grant, & Loughlin, 1999; Somer & Szwarcberg, 2001). 특히, 가정 내에서 피해를 입은 아동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닌 양육자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욱 커서 진술의 철회 내지는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Malloy 등, 2007).

철회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Malloy 등(2007)은 자식 중속 모델을 통해 진술 철회에 있어 가족 구성원의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은만큼 아동의 피해 사실을 먼저 접하게 될 확률이 높다(Malloy, Brubacher, & Lamb, 2013). 이때, 어머니의 반응에 따라 아동은 스스로의 진술을 부풀릴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다(Elliott & Briere, 1994; Celik 등, 2018). Celik 등(2018)의 연구에서는 아동 집단에게 실험자가 인형을 부서뜨리는 행위를 목격한 뒤 초기 회상을 하게하였다. 그 이후, 지지조건 집단에 대해서는 아동의 어머니가 사실대로 말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며 앞으로도 누가 물어보면 사실대로 말하도록 지지하였다. 반면, 비지지조건 집단에 대해서는 아동의 어머니가 사실대로 말하면 선생님(실험자)이 곤란해진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누가 물어보면 선생님이 인형을 부러뜨린 것이 아니라고 말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지지조건에서는 철회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지지 조건에서는 1차 면담에서 폭로했던 아동 중 절반이 넘는 인원(51.1%)이 자신의 폭로를 철회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비지지 행위가 아동의 진술 철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Celik, 2018). 한편, 지지 조건에서는 아동들이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단순히 입장을 지킨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행위를 부풀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만약, 암시된 아동이 거짓을 부풀린다면 이는 실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동의 거짓 진술이 CBCA에 의해 ‘신빙성 있음’으로 판단된다면 무고한 자를 유죄로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의 지지에 따른 아동의 거짓 부풀리기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철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진술 숨김(concealment)의 형태이고(Williams, McWilliams, & Lyon, 2020), 다른 하나는 진술 부정(denial)의 형태(Bradely & Wood, 1996; Leander, 2010)이다. 전자의 예시는 “그 아저씨가 저를 만졌어요.” 라고 진술한 뒤, 부모의 부정적 반응을 접한 뒤 “그 아저씨가 만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와 같이 피의자의 행위를 숨기는 형태가 해당한다. 후자의 예시는 “아빠가 저를 때렸어요.” 라고 말한 다음 부모의 부정적 반응을 접한 뒤 “아빠가 저를 때린 적 없어요.” 와 같이 초기와 반대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두 가지 유형 모두 평가자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논리적 일관성’ 은 CBCA 준거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준거 중 하나로 여겨지는 만큼 아동의 진술 철회는 아동의 진술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진술 철회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순히 CBCA 준거만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진술녹화영상을 참고하여 부모의 코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통해 부모의 개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진술 숨김의 경우에는 외관상 ‘기억의 부족 시인’ 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 앞선 단락에서 보았듯이 진술 숨김은 언어 구조상 “~잘모르겠어요” 의 형태로 끝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억의 부족 시인’ 준거에 대한 평가는 문장 단위로 평가하기보다는 전체 문맥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신빙성 평가 취지를 고려할 때 더 바람직해 보인다.

2. 진술평가자 요인

사람들은 동일한 진술에 대해서도 진술 속 언어적 단서를 다르게 인식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Granhag & Stormwall, 2012; Nahari, Glicksohn, & Nachson, 2010; Nahari & Vrij, 2015). 진술분석전문가 역시 진술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본인 스스로의 언어능력이 진술 판단의 기준점이 되어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Nahari & Vrij, 2014; Glicksohn, 1993), 피의자가 유죄 혹은 무죄일 것이라는 편향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이미선, 2020).

1) 평가자의 언어능력

아동의 진술을 평가하는 전문가마다 상이한 언어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평가자가 진술 속 언어적 단서를 다르게 인식하고 해석하게 만들 수 있다(Nahari, Glicksohn, & Nachson, 2010). 이러한 현상은 여러 실험연구를 통해 관찰되었으며 평가자의 개인차에 의해 진술분석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는 것은 진술분석 도구 자체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의심을 품게 만들 수 있다(Granhag & Strömwall, 2000; Masip, sporer, Garrido, & Herrero 2005).

평가자의 언어능력이 거짓탐지 도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자들은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Glicksohn(1993-1994)는 진술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개인의 경험이 그 부분에 대한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쳐 진술의 풍부함을 평가하는 기준(Decision Threshold)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가령 교통사고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구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진술의 평가자가 된다면 상당히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진술을 평가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없는 평가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설정하여 진술을 분석할 것이다. Glicksohn(1993-1994)의 연구는 언어능력이 진술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언어능력에 결부 지었기 때문에 한 개인의 포괄적인 언어능력이 진술을 평가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Granhag 과 Strömwall(2000)은 개인의 종합적인 언어능력을 통해 진술을 평가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Granhag 과 Strömwall(2000)은 언어능력을 포함한 개인차 변인에 따라 각 평가자가 진술에 대한 상이한 기준을 설정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후속하여 언어능력이 거짓탐지도구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Nahari와 Vrij(2014)의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언어적 거짓탐지 기법 중 RM 도구에 주목하여 RM 도구의 준거를 기준으로 평가자의 언어능력 수준을 구분하였다. 이후 언어능력의 수준에 따라 각 평가자가 동일한 진술을 두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언어구사 능력이 풍부한 평가자는 타인의 진술 평가를 비판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고, 언어능력이 풍부하지 못한 평가자에 비해 RM 점수를 낮게 부여하는 현상이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반대로 언어능력이 풍부하지 못한 평가자는 상대적으로 RM 점수를 높게 부여하였다. 이에 대해 Nahari와 Vrij(2014)는 평가자

가 본인의 언어능력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언어습관과 수준을 1차적인 평가 지표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추정하였다. 이처럼 본인의 언어능력은 무의식적으로 피면담자의 진술에 대한 기대치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진술 평가를 왜곡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Glicksohn(1993-1994)의 연구에서는 평가자의 이전 경험이 그 부분과 관련된 개인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평가자가 진술 내용의 풍부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평가자의 경험 차이에 의해 동일한 진술에 대하여 상이한 평가를 하게 하였다. 또한, 그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평가자의 언어능력에 따라 진술의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이 밝혀졌다(Granhag & Strömwall, 2000; Masip, sporer, Garrido, & Herrero 2005; Nahari & Vrij, 2014). 다시 말해, 일반적인 성인이 아동의 진술을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아동의 진술을 평가하기 전 별도의 교육 절차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위에서 예시로 든 연구는 비록 CBCA가 아닌 RM을 기반으로 한 연구로 CBCA를 토대로 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해보인다. 다만, RM 역시도 진술의 양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CBCA 기반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짐작된다.

2) 인지편향

기존 범심리학 연구에서는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으로 인해 법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Bogaard, Meijer, Vrij, Broers, & Merckelbach, 2014; Nahari & Ben - Shakh, 2013; Meissner & Kassin, 2004; Guthrie, Rachlinski, & Wistrich, 2001, 2002; Rachlinski, 2000; 김청택, 최인철, 2010; 박광배, 김상준, 한미영, 2005). 법관을 비롯한 법정에서의 사실판단자들은 자신이 형성한 심증과 일관된 방식으로 증거를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여, 법적 의사결정 시 판단자의 주관 개입으로 잘못된 판단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Hastie, Penrod & Pennington, 2002; Pennington & Hastie, 1992).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체계에서 가장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법관의 판단조차 인지적 편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술분석가의 판단 역시 인지적 편향에 좌우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범심리학 연구에서는 Nahari 와 Ben-Shakh(2013)가 평가자들이 진술을 평가함에 있어

‘초두효과(Primacy effect)’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진술 내용의 총량을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단지 하나는 세부 내용을 앞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고, 다른 하나는 세부 내용을 뒤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그 결과, 평가자들은 전자의 진술 내용을 더 풍부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진술 내용 초기에 받은 인상과 그로 인한 기대에 의해 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진술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관련된 연구를 발견하지는 못한만큼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시간에 따른 진술 수준의 변화가 연령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만약, 연령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어떠한 요인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역시 탐색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어린 아동일수록 진술 초기에 긴장 수준이 높아 진술을 자신의 역량에 비해 잘하지 못하다가 뒤로 갈수록 진술을 잘하게 된다면 이러한 점을 평가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Bogaard 등(2014)의 연구에서는 진술을 보기 전 접한 사전 정보가 진술분석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집단을 나누어 한 쪽 집단에게는 진술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정보(긍정적인 목격자 진술)를 제공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정보(이전의 거짓말 이력)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진술자에 관한 긍정적인 정보를 사전에 접한 집단이 진술의 세부정보가 풍부하다고 평가하여 높은 진술분석 점수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진술을 평가하기 전 접한 정보로 생겨난 인상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에 부합하는 진술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진술분석 점수가 달라지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Bogaard, Meijer, Vrij, Broers, & Merckelbach, 2014). 즉, 평가자의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에 의해 진술분석 점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이미선(2020)에 의해 유무죄 심증이 CBCA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연구 결과, 유죄 심증 집단의 CBCA 총점이 무죄 심증 집단의 CBCA 총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준거로 살펴보면, 준거1(논리적 일관성)과 준거4(맥락상 깊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두 준거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큼을 보여준다. 특히, 일반특성 준거로써 전반적인 진술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는 준거1(논리적 일관성)과는 달리 구체적 진술을 필요로 하는 준거4(맥락상 깊이)에서 심증의 영향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해당 준거에 대한 평가가 평가자

입장에서 모호하게 여겨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CBCA 개별 준거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비판(Mazzoni & Ambrosi, 2003; 이미선, 2020)과 일맥상통하는 바이다.

3) 질문유형

엄밀히 말하면 아동에 대한 질문은 주로 수사관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평가자 요인과 구별될 필요가 있으나 진술분석 평가자에 의해 질문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본 문헌에서는 질문 유형을 평가자 요인에 포함시켰다. 개방형 질문이 풍부한 진술 수집에 유리하다는 통념과는 달리 아동 대상 면담에 있어 개방형 질문 대신 직접적 혹은 유도적 형태의 질문을 사용하면 진실 진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Bottoms, Goodman, Schwartz-Kenney, & Thomas, 2002; Lyon, Malloy, Quas, & Talwar, 2008)가 존재한다. 그러나 설령 직접적 질문이 진실 진술의 양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 질문을 사용하면 진술을 하면 거짓 진술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점(Lamb 등, 2018; Lyon 등, 2019)을 고려할 때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진실 신빙성 파악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면담 질문 유형이라는 요인은 아동의 연령 및 피암시성이라는 내적 특성과 결합하여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아동이 암시에 취약한지 여부는 아동의 진술이 믿을만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SVA 절차에서는 질문 유형에 대한 검토와 CBCA 일관성 준거를 통해 피암시성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령에 따른 피암시성이 질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Vrij 와 Bush(2008)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 어린 아동이 나이 많은 아동에 비해 암시에 취약하다. 해당 연구에서는 5-6세 집단과 10-11세 집단에게 각각 영상을 시청하게 한 뒤 질문을 실시하였다. 8개의 질문 중 절반은 유도 질문에 해당하였으며, 나머지 절반은 실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질문이었다. 실험 결과, 10-11세 집단 아동들이 질문 유형에 관계없이 더 정확한 진술을 보고하였다(Vrij & Bush, 2000).

한편, Vrij 와 Bush(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은 구체적 질문의 형태(예: "duck의 친구는 어떤 종류의 동물이니?")가 주를 이루었다. 다른 질문 유형

에 비해 정확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알려진 자유 회상을 기반으로 진행된 Ceci(2002)의 연구에서도 암시적 면담이 반복됨에 따라 3-4세 아동들이 5-6세 아동들에 비해 부정확한 진술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연령이 높은 아동들이 암시에 대한 저항능력이 높고, 이미 암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오정보 방지라는 개방형 질문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관련된 국내 연구(곽금주, 이승진, 2019)에서도 위 결과는 지지되었다. 다만, 면담자가 지지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암시적 질문에 대한 오반응이 감소하여 암시 저항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할 때는 라포 형성을 통해 아동 스스로가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때 특정 답변에 대해서만 지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암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진술 분석은 진술에 의존하여 평가를 내려야하는데, 아동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요인들에 의해 편차가 커질 수 있음을 법심리학 및 발달심리학 선행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인지적 편향을 비롯한 평가자 요인 역시 국내외 법심리학 선행 연구들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검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무적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언어능력 자체는 진술분석 평가자 및 법정에서의 사실 판단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기는 하나 통제는 어려운 요인이다. 반면, 어휘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예: 다른 의미가 같은 표현으로 등장)는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수사관은 해당 표현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수사관의 확인 방식은 언어적 · 심리학적 · 수사학적 검증을 거친 전문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술을 적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미 실무에서는 NICHD 프로토콜을 “사실대로 말하기”와 같은 규칙 설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동에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의 중요

성을 인지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양육자 특히 어머니의 반응에 따라 면담에 임하는 아동의 진술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거나 진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무적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 면담 시 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이 동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해관계인이 동석할 경우, 그들의 반응에 따라 아동의 진술 도중에도 철회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면담 전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특정 답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한 주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SVA 타당도 체크리스트 절차를 통해 부모의 코칭 행위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평가자의 언어능력과 인지적 편향 등 평가자 요인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도 필요하다. 우리는 ‘모델 진술문(model statement)’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언어적 거짓탐지 접근법에서는 진술 내용의 풍부함을 통해 거짓 진술자와 진실 진술자를 구분하고자 한다. 하지만 수사면담의 대상이 되어 진술하는 사람은 각자의 언어능력 등 개인차 변인에 영향을 받아 각자 진술하는 양이 다르다(Ewens, Vrij, Leal, Mann, Jo, Shaboltas, Ivanova, Granskaya, & Houston, 2016). 특히 진실을 말하는 진술자라고 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풍부하게 이야기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엽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이 관찰되었다(Vrij 등, 2016). 이에 모델 진술문을 제공하여 진술자에게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는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Leal, Vrij, Warmelink, Vernham, & Fisher, 2015). 해당 연구에서는 모델 진술문을 제시하였을 때 진실 진술자와 거짓 진술자를 구분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진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모델 진술문을 진술자뿐만 아니라 진술 평가자에게도 제공하는 방안을 활용해볼 수도 있다. 교통사고, 폭행 등 각 범죄 유형에서 이루어지는 풍부한 진술과 풍부하지 않은 진술의 예문을 제공하고 평가자는 이를 기준으로 진술을 분석하면 평가자의 언어능력이 갖는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Nahari와 Vrij(2014)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소개되었다. Nahari와 Vrij(2014)는 RM 도구를 통해 진술을 분석할 때 평가자의 언어능력에 따라 진술 평가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에 평가자들이 RM 도구의 평가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각 준거에 대한 예문을 통해 교육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예문이 곧 ‘모델 진술’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에 중점을 둔다면 RM뿐만 아니라 CBCA 등 언어적 거짓탐지를 위한 진술분석 도구에서

각 증거에 대한 모델 진술을 정립하고 매뉴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모델 진술은 이전의 실제 사건에서 나타난 거짓 진술과 진실 진술의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정립된 모델 진술은 ‘풍부함’, ‘빈약함’, ‘애매함’ 등의 기준으로 나뉠 수 있겠으며 평가자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술을 분석해야 한다.

평가자의 언어능력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는 실제 진술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평가자의 진술분석 평가 기준에 대한 경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중요 사건에 대한 진술분석을 할 때 동일한 진술에 대해 2명 이상의 평가자가 평가를 하는 경우와 언어적 거짓탐지를 검증하는 여러 연구에서는 진술을 분석하는 평가자 간 일치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본 진술분석에 들어간다. 하지만 현장의 수사 실무에서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하나의 진술에 한 명의 평가자가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평가자 개인차에 의해 진술분석 결과가 달라져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평가자의 평가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가령 평가자 A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아동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할 것을 의뢰받았다. 이때 본 사건의 진술분석에 앞서 사전에 선정된 ‘모델 진술’에 대해 평가자 A의 경향성을 사전 평가할 수 있다. 이때 평가자의 평가 성향을 파악하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 ‘모델 진술문’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델 진술문은 보통 수사면담에서 피면담자의 풍부한 진술 확보를 돕기 위해 사용되며 학문적인 검증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평가자의 경향성을 확인하거나 평가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모델 진술문의 개발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평가자의 입장에서 활용될 모델 진술문의 개발과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 가령 피면담자의 연령, 지적 수준, 언어 능력에 따라 피면담자 진술의 ‘풍부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6-8세, 9-11세 등 연령 범위를 구분하고 해당 구간의 아동이 진술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후 다수의 평가자에 의해 분석하여 풍부함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세워진 후에야 실질적으로 평가자의 평가 성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고 평가자에게 풍부함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탈편향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인지적 편향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편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음을 언급하고 있다(Schuller & Hasting, 2002; Steblay, Hosch, Culhane, & Mcwethy, 2006). 다만, 인지적 편향에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하거나 지침을 내릴 때는 왜 특정 단서가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가 설득력 있게 제시될수록 탈편향 효과가 크다(Steblay, Hosch, Culhane, & Mcwethy, 2006; Nahari & Vrij, 2016). 따라서 탈편향 교육은 특정 단서가 편향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CBCA의 구조적 한계를 아동 중심 변인과 아동 외적인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CBCA 관련 논의를 위해 발달심리학적 논문을 검토하고, 접목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목적이 다른 연구 간 논리의 연결 과정에서 비약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의 개인차 변인과 관련한 법심리학적 경험 연구를 통해 위에서 다루었던 논의들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우리가 제시한 교육 및 방안들은 응용을 위해 경험적 연구를 통한 입증이 필요하거나 구체화를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관련된 후속 연구 진행을 통해 우리가 제시한 방안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무자와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경찰청. (2017). 진술분석가 의견 작성 매뉴얼.
- 박금주·이승진. (2019). “면담자의 정서적 태도 및 아동의 개인차 특성이 아동의 자발적회상과 암시적 정보의 저항 수준에 미치는 영향”. 「과학수사학회지」, 13: 33-42.
- 김한균·윤해성·박윤석·김면기·유승진·정교일·이덕규·이창훈·권양섭, 조은경·김민지·이운정·김대원·이원상·이경력·차종진. (2018).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8-63-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광배·김상준·한미영. (2005). “가상적인 재판 쟁점에서의 현역판사의 판단과 모의배심의 집단판단에 대한 인지적 방략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59-84.
- 박미량·이민식. (2014).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결정인자 평가 연구”. 「한국경찰연구」, 13(3): 53-80.
- 박종선. (2016). “[진술분석]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대검예규 ‘진술분석 규정’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7(2): 257-276.
- 이미선. (2020). “유무죄 심증이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4(2): 37-53.
- 이승진. (2012). “아동의 진술 역량 및 한계점에 대한 고찰: 아동의 인지 및 언어 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 3(3): 153-168.
- _____. (2016). “아동의 회상 보고 정확성에 아동의 연령, 양육자의 지지가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4): 523-541.
- 이운호. (2005). 「범죄학개론」, 서울: 박영사.
- 이운호·이금형. (2007). “아동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보호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3: 185-217.
- 조은경. (2004).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113.

〈국외문헌〉

- Amado, B. G., Arce, R., & Fariña, F. (2015). “Undeutsch hypothesis and 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A meta-analytic review” ,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Applied to Legal Context*, 7(1): 3-12.
- Bogaard, G., Meijer, E. H., Vrij, A., Broers, N. J., & Merckelbach, H. (2014). “Contextual bias in verbal credibility assessment: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reality monitoring and scientific content analysis” ,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8(1): 79-90.
- Bradley, A. R., & Wood, J. M. (1996). “How do children tell? The disclosure process in child sexual abuse” , *Child abuse & neglect*, 20(9): 881-891.
- Carl, T., & Bussey, K. (2019). “Contextual and age-related determinants of children’s lie telling to conceal a transgression” ,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8(3): 2129.
- Celik, G., Tahiroğlu, A., Yoruldu, B., Varmış, D., Çekin, N., Avci, A., ... & Nasiroğlu, S. (2018). “Recantation of sexual abuse disclosure among child victims: Accommodation syndrome” ,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7(6): 612-621.
- Connolly, D. A., Price, H. L., Lavoie, J. A., & Gordon, H. M. (2008). “Perceptions and predictors of children’s credibility of a unique event and an instance of a repeated event” , *Law and Human Behavior*, 32(1): 92-112.
- Davies, G. M., Westcott, H. L., & Horan, N. (2000). “The impact of questioning style on the content of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suspected child sexual abuse victims” , *Psychology, Crime and Law*, 6(2): 81-97.
- <http://lps3.doi.org.sproxy.dongguk.edu/10.1080/10683160008410834>
- Erdmann, K., Volbert, R., & Böhm, C. (2004). “Children report suggested events even when interviewed in a non-suggestive manner: what are its implications for credibility assessment?” ,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The Official Journal of the Society for Applied*

-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18(5), 589-611.
- Ewens, S., Vrij, A., Leal, S., Mann, S., Jo, E., Shaboltas, A., ... & Houston, K. (2016). "Using the model statement to elicit information and cues to deceit from native speakers, non-native speakers and those talking through an interpreter",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30(6): 854-862.
- Glicksohn, J. (1993). "Altered sensory environments,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 and altered-state cognition", *The Journal of mind and behavior*, 1-11.
- Granhag, P. A., Strömwall, L. A., & Allwood, C. M. (2000). "Effects of reiteration, hindsight bias, and memory on realism in eyewitness confidence",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The Official Journal of the Society for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14(5): 397-420.
- Gongola, J., Scurich, N., & Quas, J. A. (2017). "Detecting deception in children: A meta-analysis", *Law and human behavior*, 41(1): 44-69.
- Horowitz, S. W., Lamb, M. E., Esplin, P. W., Boychuk, T. D., Krispin, O., & Reiter-Lavery, L. (1997). "Reliability of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of child witness statement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2(1), 11-21.
- Leal, S., Vrij, A., Deeb, H., & Jupe, L. (2018). "Using the model statement to elicit verbal differences between truth tellers and liars: The benefit of examining core and peripheral detail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7(4): 610-617.
- Leander, L. (2010). "Police interviews with child sexual abuse victims: Patterns of reporting, avoidance and denial", *Child Abuse & Neglect*, 34(3): 192-205.
- Malloy, L. C., Lyon, T. D., & Quas, J. A. (2007). "Filial dependency and recantation of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6(2): 162-170.
- Malloy, L. C., Brubacher, S. P., & Lamb, M. E. (2013). " 'Because she' s

- one who listens ‘ children discuss disclosure recipients in forensic interviews’ , *Child maltreatment*, 18(4): 245-251.
- Masip, J., Sporer, S. L., Garrido, E., & Herrero, C. (2005). “The detection of deception with the reality monitoring approach: A review of the empirical evidence” , *Psychology, Crime & Law*, 11(1): 99-122.
- Nahari, G., Glicksohn, J., & Nachson, I. (2010). “Credibility judgments of narratives: Language, plausibility, and absorption” ,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23(3): 319-335.
- Nahari, G., & Ben-Shakhar, G. (2013). Primacy effect in credibility judgements: The vulnerability of verbal cues to biased interpretation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7(2): 247-255.
- Nahari, G., & Vrij, A. (2014). “Can I borrow your alibi? The applicability of the verifiability approach to the case of an alibi witness” ,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3(2): 89-94.
- _____ . (2015). “Systematic errors (biases) in applying verbal lie detection tools: richness in detail as a test case” , *Crime Psychology Review*, 1(1): 98-107.
- Nahari, G. (2016). When the long road is the shortcut: A comparison between two coding methods for content-based lie-detection tools. *Psychology, Crime & Law*, 22(10), 1000-1014.
- Pennington, N., & Hastie, R. (1992). “Explaining the evidence: Tests of the Story Model for juror decision making”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2): 189.
- Santtila, P., Roppola, H., Runtti, M., & Niemi, P. (2000). “Assessment of child witness statements using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The effects of age, verbal ability, and interviewer’s emotional style” , *Psychology, Crime and Law*, 6(3): 159-179.
- Somer, E., & Szwarcberg, S. (2001). Variables in delayed disclosure of childhood sexual abus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1(3), 332-341.
- Stebly, N., Hosch, H. M., Culhane, S. E., & McWethy, A. (2006). “The impact on juror verdicts of judicial instruction to disregard

- inadmissible evidence: A meta-analysis” , *Law and Human Behavior*, 30(4): 469-492.
- Sporer, S. L., Manzanero, A. L., & Masip, J. (2021). “Optimizing CBCA and RM research: recommendations for analyzing and reporting data on content cues to deception” , *Psychology, Crime & Law*, 27(1): 1-39.
- Stromwall, L. A., & Granhag, P. A. (2005). “Children’s repeated lies and truths: effects on adults’ judgments and reality monitoring scores” ,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2(2): 345-356.
- Vernham, Z., Vrij, A., Nahari, G., Leal, S., Mann, S., Satchell, L., & Orthey, R. (2020). “Applying the verifiability approach to deception detection in alibi witness situations” , *Acta psychologica*, 204: 1-30.
- Vrij, A., & Bush, N. (2000). “Differences in suggestibility between 5-6 and 10-11 year olds: The relationship with self confidence” , *Psychology, Crime and Law*, 6(2): 127-138.
- Vrij, A., Akehurst, L., Soukara, S., & Bull, R. (2002). “Will the truth come out? The effect of deception, age, status, coaching, and social skills on CBCA scores” , *Law and human behavior*, 26(3): 261-283.
- Vrij, A. (2005).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A Qualitative Review of the First 37 Studies” ,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1(1): 3.
- Vrij, A., Leal, S., Mann, S., Dalton, G., Jo, E., Shaboltas, A., Houston, K. (2017). “Using the model statement to elicit information and cues to deceit in interpreter-based interviews” , *Acta Psychologica*, 177: 44- 53.
- Williams, S., McWilliams, K., & Lyon, T. (2020). “Children’ s concealment of a minor transgression: The role of age, maltreatment, and executive functioning” ,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91: 104-164.

【Abstract】

Factors of children and statement evaluators influencing the analysis of statements of sexual violence victim children: CBCA Approach

Sunwoo Hwang*

Youngbin Joo**

Eunkyung Jo***

It is important to analysis statement of sexual violence victim children because we can easily found the absence of physical evidence of the case. However, CBCA, widely used statement analysis tool, is based on amounts of victim's statement. Considering children's statement is unstable compared to adult's statemen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children's statement properly. In this paper, we reviewed papers about individual factors and estimator factors which are influencing the analysis of statements. Base on paper review, we intend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investigation and statement analysis of child victims.

Key Words: sex crime against children, child victim statements, statement analysis, crime prevention. CBCA

*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first author)

**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co-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College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Dongguk University-Seoul(corresponding author)

부 록

-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규정 · 91
- 형사사법연구 투고규정 · 95
- 형사사법연구 심사규정 · 103
- 형사사법연구 편집규정 · 106
-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연구윤리규정 · 108
- 형사사법연구 원고모집 안내 · 116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규정

2006. 10. 19. 제정

2008. 10. 13. 개정

2021. 6. 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재) 이 연구소는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동국대학교 일반연구기관으로 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에 둔다.

제2조 (목적) 이 연구소는 형사사법 관련 학문의 발전과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외부연구용역과제 수주사업
2. 연구논문집 발간
3. 학술행사개최
4. 학술서적 출간

제4조 (기구) ① 연구소의 운영과 중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하 연구부를 둔다.

1. 경찰학연구부
2. 범죄학연구부
3. 교정·보호연구부
4. 민간경비연구부
5. 법심리학연구부

제5조 (산하연구부기능) ① 경찰학연구부에서는 경찰의 인사, 조직, 치안정책 및 경찰작용, 인권문제 등 경찰학 연구를 통해 치안정책 개발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범죄학연구부는 범죄의 현상,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범죄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교정·보호연구부에서는 교정 분야와 보호관찰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관하

협력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④ 민간경비연구부에서는 민간경비산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 산학협력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⑤ 법심리학연구부에서는 법심리학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산학협력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임직원) 이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 1. 소장 1인
- 2. 연구위원 약간인
- 3. 연구부장 5인
- 4. 연구원 약간인
- 5. 조교 약간인

단,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 약간을 둘 수 있다.

제7조 (자격 및 임명) ① 소장의 자격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학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위원 및 연구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 ③ 연구원은 본 대학교 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 ④ 조교는 본 대학교 인사규정을 따른다.
- ⑤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임 기) ① 이 연구소의 모든 임원(소장, 연구위원,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연구원 및 조교는 본 대학교 연구원 및 조교 규정에 따른다.
- ③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직 무) ①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연구위원, 연구부장은 연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 ③ 조교는 이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보조한다.
- ④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 및 연구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10조 (정 원) 이 연구소에 소속되는 연구원 및 조교의 운영정원은 필요에 따라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연구위원회

제11조 (연구위원회) ① 이 연구소의 운영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위원이 겸임한다.

제1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의 계획, 예산 및 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5. 기타 이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제정 및 보고

제14조 (재원) 이 연구소의 재원은 학술용역사업의 수익금, 교육사업의 수익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15조 (회계연도)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보고) ①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기관 운영보고서(당해 연도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 활동 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 활동 실적을 수시로 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산) ① 학장은 본 연구소의 업적을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과대학 자체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본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한다.(2006. 10. 19.)

부 칙

94 형사사법연구 제5권 제1호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2008. 10. 13.)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2021. 6. 1.)

형사사법연구 투고규정

2010. 9. 1. 제정

2021. 6. 1. 개정

동국대학교 부설연구기관 경찰·범죄연구소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연구논문집)의 명칭은 형사사법연구(Kore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라 한다. 학술지 형사사법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규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년 2월 말일, 8월 말일 연 2회 발행되는 형사사법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경찰학, 범죄학, 범심리학, 교정학 및 인접학문 분야에 해당되는 학술논문으로서 독창성이 있고,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원고제출 자격) 원고제출 자격은 해당 학문 분야의 석사과정 재학생 이상에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내용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의 요건에 준하는 자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3. (원고제출 방법) 원고는 당해 연도 권의 제1호를 위해서는 전년도 12월 말일, 제2호를 위해서는 6월 말일의 제출마감일까지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을 초과하여 제출한 논문은 다음 호 게재를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언어 및 원고작성) 제출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것도 가능하다(단, 관련분야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여야 한다. 이 경우 초록은 한국어로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제출원고는 형사사법연구의 원고작성지침을 따른 것이어야 한다. 원고작성지침은 동국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지-사회과학연구-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5. (학술지의 전자출판 및 저작권 활용 동의) 형사사법연구는 종이 문서 외에도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재 등을 통해 발행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연구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논문기고 신청서의 “논문복사전송권 위임” 항목에 따라 해당 논문의 전자출판 및 저작권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6. 형사사법연구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지 않은 원고의 원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원고작성지침

- 1.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로 130매(「한글」에서 본 학술지 편집규격 기준 25매 분량) 내외
- 2. 원고는 제목, 제출자, 목차, 본문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하며, <표> 및 <그림> 등은 본문 내에 순서에 따라 기입한다.
- 3. 본문의 장, 절, 항, 목은 로마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재한다.
 - I. 1. 1) (1) ① 가)
 단, 더 세부적인 항목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자가 일정한 규칙을 갖고서 임의로 선택한다.
- 4. 본문 작성이 완료된 위치에 본문과 구분하여 <참고문헌>을 기재하되 참고문헌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5. 국문요약은 본문의 시작 전에 편성하되 용지 1매 이내로 하고, 영문요약(Abstract)은 논문 말미에 첨부하되 영문제목과 저자의 영문성명을 포함하여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되어야 한다.
- 6. 본문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만 漢字를 쓰도록 하며, 기타의 외국어 표기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옆에 괄호로 표기한다.
- 7. 본문의 내용과 관계되는 저술을 소개하거나 추가적인 설명 또는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할 때는 본문주를 사용한다. 본문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은 외국어의 경우 原語를 그대로 표기하며, 한글 또는 국한문 혼용의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의 원고작성범례를 참조한다.
- 8. <표> 및 <그림>의 경우 그 출처를 기재하며, 그 형식은 본문주와 같다. 출처와 본문주가 중복될 경우에는 재인용의 예를 따른다.
- 9.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제목의 우측 상단에 별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할 수 있다.

원고작성범례

I. 논문형식

- 1. 원고는 제목, 저자, 목차(장만 표기), 국문요약(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키워드 포함)의 순으로 구성한다.

2. 논문요약(국문 및 영문)은 본 학술지의 편집규격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최소 1/2 이상 작성해야 한다.
3. 원고의 표지에는 제목(국, 영문), 저자이름(국, 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e-mail 등을 명기하되 표지 이외에는 저자를 짐작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4.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 제일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로 본다.
5. 국·영문 주제어(Key Words)는 각각 5개 이상 작성한다.
6. 외래용어 및 외국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용어를 부기한다. 외국 인명과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에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7.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II. 원고 작성시 집필요령

[본문주]

1. 인용,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하여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말미에 첨부한다.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출판년도 다음에 곧바로 콜론(:)을 하고 한 칸 띄우고 숫자를 표기한다.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 1) 저자가 본문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 이황우(1999: 30)에 의하면...
 - 정진환(1992)과 김보환(1999)의 연구에서도...
 - Stevens(1998)의 주장을 수정하여...
 - 이상현(1991)과 Berg(1992)를 들 수 있다.
 - 2) 저자가 본문과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중범 외, 1990; Berg, 1992; 김충남, 1999).

-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Eisenberg et al., 1973; Green & Taylor, 1988)
- …라고 볼 수 있다(「경찰법」 § 11④; 경찰청, 1994; 김규식, 1999).
- 3) 법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 「경찰법」 제11조 제4항에서는…
- 4) 특별한 저자가 없는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 「 ‘92 경찰사료연감」(1993: 154)에 지시된…
- 5)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et al.)”라는 말을 붙이거나,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 …이다(이황우 외, 2006).
 - …이다(이황우·조병인·최응렬, 2006).
- 6) 연도가 같은 동일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 인용될 경우
 - 연도표기 뒤에 a, b, c… 를 부기하여 문헌을 구분한다.
 - …라고 볼 수 있다(김보환, 1998a).
 - …라고 볼 수 있다(김보환, 1998b).
- 7) 일간지, 주간지 등의 기명기사와 칼럼일 경우
 - 저자명, 발행연도, 발행월, 발행일 순으로 작성한다.
 - …이다(최응렬, 2000. 10. 12)
- 8)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
 - 지명, 발행연도, 발행월, 발행일, 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 …있기를 기대한다(「중앙일보」, 2005. 4. 26: 33).
- 9)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
 - 제작자명, 제작년도, 발행월, 발행일 순으로 작성한다.
 - …이다(최응렬, 2007. 10. 20).
-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붙이고(예: …하였다.¹⁾), 그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국외문헌(동, 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의 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의 순으로 제시한다.
2.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 순으로 나열

한다.

3.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저술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를 부기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5.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발표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6.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1) 단행본인 경우

[저자명. (출판년도). 「도서명」, 출판사항.]

 - 이윤호. (2005a). 「범죄학개론」, 서울: 박영사.
 - 이윤호. (2005b). 「교정학개론」, 서울: 박영사.
 - 이황우·조병인·최응렬. (2005a),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 일반논문인 경우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 주희중. (1999). “범죄에 대한 공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9: 87-121.
 - 이종범·김준한·정용덕. (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24(1): 367-426.
 - 3) 학위논문인 경우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유형」, 수여기관명.]

 - 정진환. (1979). “한국경찰교육제도의 발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4) 단행본의 저자와 기고논문의 저자가 다른 경우

[논문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수록서의 저자명. 「수록서명」, 수록페이지, 출판사.]

 - 김창준·안영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형태 비교”, 박동서·김광웅(공편). 「의회와 행정부」, 77-115, 법문사.
 - 5) 기타 저자가 없는 경우
 - 경찰청. (1993). 「1992 경찰사료연감」.
 - 경찰청. (2007). 「경찰백서」.
 - 6) 일간지, 주간지 등의 기명기사와 칼럼일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발행월. 발행일). “기사명”. 「지명」, 페

이지.]

○ 최응렬. (2005. 4. 26).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논의 ‘수사의 질’ 향상에 초점 맞춰야”, 「중앙일보」, 33면.

7)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 [지명. (발행연도. 발행월. 발행일). “기사명”.]

○ 중앙일보. (2005. 4. 26).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논의 ‘수사의 질’ 향상에 초점 맞춰야”.

8) 외국문헌이 단행본인 경우(도서명은 이탤릭체로 변환) [저자명. (출판년도). *도서명*, 출판사소재지: 출판사.]

○ Weisburd, David & Braga, Anthony A. (eds.). (2006). *Police Innovation: Contrasting Perspectiv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9) 외국문헌이 논문인 경우(Journal명은 이탤릭체로 변환)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 Powell, Dennis D. (1990). “A Study of Police Discretion in Six Southern Citie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7(1), 1-7.

10) 번역서의 경우

[저자. (원본 출판연도). 도서명, 번역자명(역). (번역본 출판연도). 「번역본 제목」, 출판사.]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김인필(역). (1995). 「범죄에 관한 일반이론」, 서울: 박영사.

11)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제작자명. (제작년도). “주제명”, 웹주소, 최종검색일자.]

○ 홍길동.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http://ks.ac.kr>, 2007. 10. 20 최종검색.

[국문요약과 영문요약]

1. 논문 제출 시 원칙상 국문요약과 영문요약(Abstract)을 포함해야 하며, 작성 시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국문요약은 논문 제목과 저자명(소속) 밑에 작성하며, 분량은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국문요약 하단에는 5단어 이상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영문요약은 참고문헌 다음에 작성해야 하며, 영문제목, 저자의 영문성명과 영문소속, 연구 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으로 된 국문요약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편집규격과 기타]

1. 투고논문의 규격과 양식
 - 1) 용지 종류 및 용지 여백:
 - 용지 종류: 사용자정의(폭 171mm * 길이 251mm)
 - 용지 여백: 위쪽 26, 아래쪽 28, 오른쪽 28, 왼쪽 28, 머리말 15, 꼬리말 0
 - 줄간격: 160 (국문요약의 경우 150)
 - 자간: -10
 - 2) 논문제목: HY전명조 진하게 16p, 자간 -5
 - 3) 저자명: HY견고딕 12p
 - 4) 국문요약: 제목은 돋움체 진하게 12p, 가운데정렬, 본문은 돋움체 9p, 줄간격 150, 주제어는 돋움체 9p, 들어쓰기 10p
 - 5) 장절항목: 장제목은 한컴솔잎B 15p, 문단 위 간격 30, 문단 아래 간격 20, 절제목은 한컴소망B 12p, 항제목은 HY견고딕 11p, 들어쓰기 10p, 목제목은 휴먼명조 진하게 11p, 들어쓰기 20p
 - 6) 본문: 휴먼명조 10p, 들어쓰기 10p
 - 7) 각주: 돋움체 9p, 줄간격 130
 - 8) 참고문헌: 참고문헌 제목은 한컴소망B 13p, 가운데 정렬, 자간 10, 문단 위 간격 30, 문단 아래 간격 20, 국내문헌·국외문헌 제목은 HY견고딕 11p, 자간 -10, 참고문헌 본문은 휴먼명조 10p, 내어쓰기 40p, 자간 -10
 - 9) 영문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진하게 16p, 가운데 정렬, 자간 -5, 영문성명은 휴먼명조 진하게 12p, 자간 0, 본문은 휴먼고딕 9p, 자간 -10, 영문주제어는 휴먼고딕 9p, 자간 -10, 들어쓰기 10p
2.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 1, 1), (1), ①, 가)의 순서를 따른다.
 - I. 로마숫자(글자크기: 15p 진하게, 가운데정렬)
 1. 아라비아 숫자(글자크기: 12p, 2칸 들어쓰기)
 - 1) 한글(글자크기: 11p, 4칸 들어쓰기)
 - (1) 괄호숫자(글자크기: 10p, 6칸 들어쓰기)
 - ① 동그라미 숫자(글자크기: 10p, 8칸 들어쓰기)
 - 가) 반괄호한글(글자크기: 10p, 9칸 들어쓰기)
3.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표 1〉, 〈그림 1〉) 표와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설명주는 “주: 1), 2), 3)” 으로 시작하고(※주: ()은 점유율), 자료 출처는 아래 부분에 밝힌다(※자료: Duncan, 1981: 349의 재구성).

4. 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 $p < .05$, ** $p < .01$, *** $p < .001$ 과 같이 표기한다.
5. 그림에서는 x축과 y축과 곡선·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 주어야 한다.
6. 원고 작성의 편의상 내용주, 표와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만 표시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7.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졸고’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름을 밝혀 적는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0. 9. 1.)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2021. 6. 1.)

형사사법연구 심사규정

2010. 9. 1. 제정

2021. 6. 1. 개정

학술지 형사사법연구의 심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형사사법연구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의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출원고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모든 제출원고에 대하여 한 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원고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전공분야의 편집위원이 논문의 주제와 내용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편집위원 전체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 이상의 논문심사를 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5.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술지 형사사법연구의 심사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주제의 적절성, 연구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구성·집필의 적절성, 논문 전개의 명료성, 활용자료의 충실도, 학술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논문을 심사하고 종합적인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논문심사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야 하고, <최종판정> 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 1) 게재 가 : 별도의 보완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2) 수정 후 게재 : 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수정 후 재심 : 내용의 전반적인 보완 및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보완 및 수정 후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게재 불가 : 게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거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심사위원은 “심사평”을 첨부하여 심사소견 및 판정내용과 ‘수정사항’ 또는 ‘게재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논문게재여부는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6. 편집위원회의 의결 후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출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한편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에는 초심에서 ‘게재 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바꾸지 아니하고,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재심사는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두 종류로만 판정하며, 초심의 결과와 재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게재 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최종 확정한다.
 8.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게재확정이 이루어져야 게재할 수 있다.

학술지 형사사법연구의 편집과 관련한 수정 지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논문의 원고작성 형식이 본 학술지에 맞지 않거나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수정을 지시한다.
2. 수정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본 학술지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3. 기타 위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동국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원 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사회과학연구-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0. 9. 1.)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2021. 6. 1.)

형사사법연구 편집규정

2010. 9. 1. 제정

2021. 6. 1. 개정

학술지 형사사법연구 발행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발행횟수) 형사사법연구의 발행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2. (발행일시) 형사사법연구는 매년 당해 연도 권(卷) 제1호는 2월 말일, 제2호는 8월 말일에 각각 발행한다.
3. (원고마감) 각 년도의 제1호에 논문게재를 원할 경우 논문을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제2호에 게재를 원할 경우 논문을 당해 연도 6월 말일까지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에 제출한다. 마감일을 초과하여 제출한 논문은 다음 호 게재를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원고분량) 형사사법연구에 게재할 원고는 200자 원고지로 130매(「한글」에서 본 학술지 편집규격 기준 25매 분량) 내외여야 한다. 제출원고가 현저하게 분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필자에게 첨삭을 요청할 수 있다. 필자가 첨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논문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5. (심사) 제출원고는 형사사법연구의 심사규정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판정받는다(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연구 심사규정 참조).
6. (편집)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책임 하에 형사사법연구의 편집형태에 맞춰 일괄 편집한다.

학술지 형사사법연구의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성) 편집위원회는 경찰·범죄연구소 소속의 연구부장 혹은 연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특히 경찰학, 범죄학, 법심리학, 교정학 및 인접학문 분야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교내외 교수 및 전문연구자들로 균형 있게 구성한다.
2. (목적) 편집위원회는 형사사법연구를 내실 있게 발간하는 데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임 무) 편집위원회는 형사사법연구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특집 및 기획의 계획과 심사,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임, 그리고 형사사법연구와 관련된 여타의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4. (회의 개최 및 의사결정)
 - 1) 편집위원회 회의는 매년 원고제출마감 및 심사완료에 맞춰 각 2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편집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히 결정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
 -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기획과 편집 그리고 학술지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6. 기타 위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동국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사회과학연구-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0. 9. 1.)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2021. 6. 1.)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연구윤리규정

2010. 9. 1. 제정

2021. 6. 1. 개정

제1장 총 칙

1. (목적) 동국대학교 부설 경찰·범죄연구소(이하 “본 연구소” 라 한다)는 본 연구소의 설립 취지 및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자 혹은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이 규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와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관계자 및 본 연구소의 학술지 형사사법연구에 원고를 투고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연구윤리규정 서약)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 적용 대상자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서약해야 한다.

제2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4. (표절)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 혹은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내용·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연구결과 혹은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표절)에 해당된다.
5.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을 인정받는다. 또한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된다.

6. (중복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을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출판(투고)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중복게재)에 해당된다.
7. (위조, 날조, 변조) 저자는 자신의 연구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사실이 아닌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거나(날조), 연구 과정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날조)에 해당된다.
8. (기타 연구부정행위) 상기 항목 외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및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기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
9. (인용 및 참고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하여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10. (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연구 결과가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제공을 받은 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11. (편집위원 윤리)
 - 1) 편집위원이란 본 연구소의 학술지 형사사법연구의 편집위원을 말한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12. (심사위원 윤리)

1) 심사위원이란 본 연구소의 학술지 형사사법연구 편집위원 중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을 말한다.

2)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합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5)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13. (연구소 관계자 윤리)

1) 연구소 관계자란 본 연구소의 소장, 연구부장, 연구위원, 편집위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조교 및 연구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혹은 활동에 직접 참여한 자 등을 말한다.

2) 연구소 관계자는 연구소의 각종 사업과 기타 학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립목적에 반하는 혹은 설립취지를 훼손하는 등의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소의 학술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는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4) 연구소의 학술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시행지침

14. (연구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연구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 현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연구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15.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본 연구소에서 학술활동을 하는 자는 다른 이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자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하며,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 연구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16. (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선임은 연구부장, 연구위원 혹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선임된 윤리위원들 가운데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17. (윤리위원회의 소집)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윤리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외부에서 연구윤리규정 위반 행위가 보고될 경우, 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8. (윤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9. (윤리위원회의 조사)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20.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1.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본 연

구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2.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윤리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 및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 혹은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심의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가 종료되면 1주일 이내에 연구소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23. (재심의)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제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은 소집된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5. 기타 위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동국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원 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사회과학연구-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0. 9. 1.)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2021. 6. 1.)

<별표 1> 논문심사의견서

<형사사법연구> 논문심사의견서 ①

논문제목	
------	--

<심사위원 정보>

성명		연락처	
소속		직위	
주소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심사평가>

※해당란에 ○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 점수	10	9	8	7	6	5	4	3	2	1
주제의 적절성										
연구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구성·집필의 적절성										
논문 전개의 명료성										
활용자료의 충실도										
학술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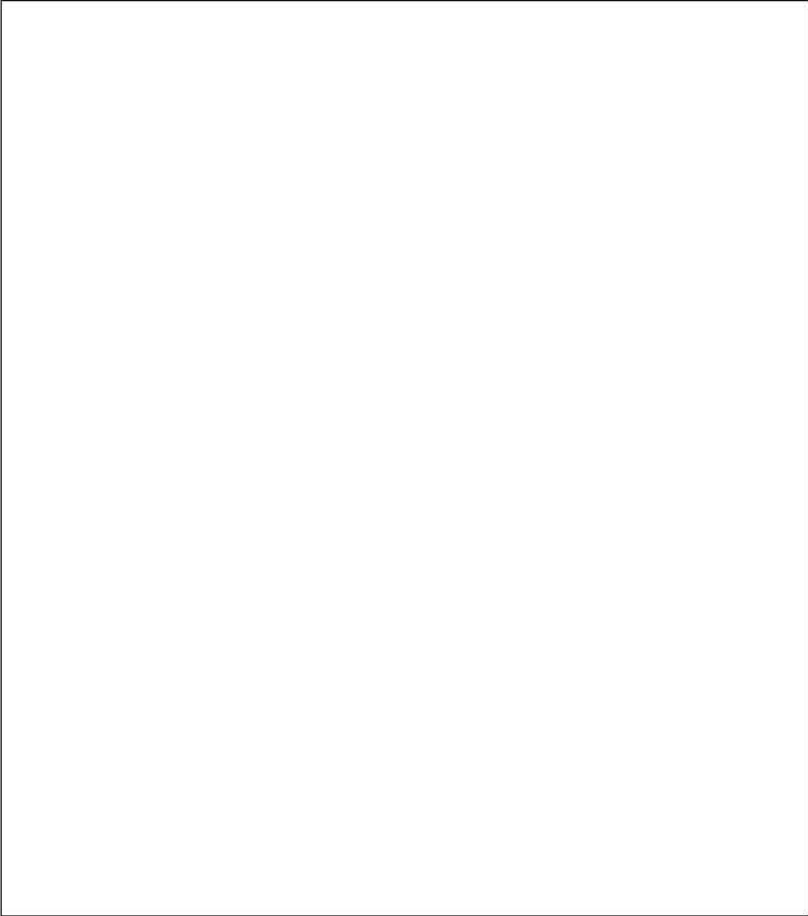
<최종판정>

※해당란에 ○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형사사법연구〉 논문심사의견서 ②

- 논문에 대한 심사평 또는 수정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 불가 논문인 경우 게재 불가 사유 명시)
- 평가자의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논문투고자에게 통보됩니다.



<별표 2> 논문기고신청서

형사사법연구 제0권 제0호 논문기고신청서

성명			영문성명	
소속	국문			
	영문			
직위	국문	연락처		
	영문	e-mail		
주소				

논문분야				
논문제목	국문			
	영문			
주제어	국문			
	영문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	본인은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함()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참고
논문복사전송권 위임여부	동의함() 동의안함() ※복사전송권이란 학술지의 인터넷 전송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말함. 관련 내용은 형사사법연구 투고규정 참고
투고자 유의사항	<p>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게재가 거부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연구 편집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 이 논문이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을 것. ▪ 이 논문이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을 것. <p>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음()</p>

* 보내실 곳: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M426 경찰·범죄연구소 편집위원회, e-mail: ripcdgu@gmail.com

* 보내실 내용: ① 논문기고신청서, ② 기고논문 원본파일

* 형사사법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에 있음에 동의합니다.

형사사법연구 원고모집 안내

1. 발행예정 논문집

- (1) 형사사법연구 제5권 제2호
 - * 원고접수 마감일: 2022년 6월 30일
 - * 발행 예정일: 2022년 8월 31일
- (2) 형사사법연구 제6권 제1호
 - * 원고접수 마감일: 2022년 12월 31일
 - * 발행 예정일: 2023년 2월 28일

2. 투고 시 유의사항

- * 200자 원고지로 130매(「한글」에서 본 학술지 편집규격 기준 25매 분량) 내외
- * 논문기고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 * 국문/영문초록은 A4용지 1매 이내여야 하며, 영문초록 Key Word는 국문초록 주제어와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 * 주제어는 국문·영문 모두 5개 이상 표기하여야 합니다.
- * 본문의 인용문헌과 참고문헌의 서지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을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대상 논문은 심의를 통과한 후 심의결과서와 함께 논문을 투고할 수 있습니다.
- * 최종본 송부시 편집양식을 샘플양식 및 편집규정에 맞도록 편집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투고와 관련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 소: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M428 경찰·범죄연구소 편집위원회
- * 전화번호: 02-2260-3240
- * e-mail: ripcdgu@gmail.com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신소라(전주대학교)
편집위원	김다은(상지대학교)
	김은주(세한대학교)
	문인수(영산대학교)
	박보라(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찬혁(영산대학교)
	박희균(세명대학교)
	심민규(나사렛대학교)
	심혜인(영산대학교)
	조제성(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홍승표(전주대학교)
편집간사	이혜진(동국대학교)

형사사법연구

제5권 제1호, 2022년

발행일	2022년 2월 28일
발행인	조운오
발행처	동국대학교 부설 경찰·범죄연구소
주소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TEL: 02-2260-3247 e-mail: ripcdgu@gmail.com
인쇄처	동국카피센터 (TEL: 02-2271-0776)